

한국은행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한국 근현대 화폐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 개항기 ~ 광복 이후 —

2019. 9. 30.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박 평 식

한국 근현대 화폐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 개항기 ~ 광복 이후 —

연구책임자 박 평 식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연구보조원	고은경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이태경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최원하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박벼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

# 차 례

I. 서 언 .....	1
II. 개항 ~ 대한제국기 .....	4
1. 19세기 후반 화폐경제의 개황 .....	4
2. 개항 후 은행 설립론과 전환국의 설치 .....	13
3. 화폐제도의 ‘개혁’ 과 대일 종속성의 심화 .....	16
4. 일제의 화폐정리사업과 금융공황 .....	21
5.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	26
6. 전망과 제언 .....	33
III. 일제강점기 .....	35
1. 식민지 통화제도의 형성과 그 성격 .....	35
2. 대공황 이후 엔 블록의 형성과 통화제도의 변화 .....	44
3.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	46
4. 전망과 제언 .....	49
IV. 광복 이후의 시기 .....	52
1. 광복 이후 ~ 한국은행 설립 이전의 화폐와 화폐제도 .....	52
2. 한국은행 설립 이후의 화폐와 화폐제도 .....	55
3.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	57
4. 전망과 제언 .....	61
V. 결 어 .....	64
VI. 참고문헌 .....	68

## 표 차례

〈표 1〉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개항 ~ 대한제국기) .....	26
〈표 2〉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일제강점기) .....	47
〈표 3〉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광복 이후) .....	56

# I. 서 언

화폐란 일반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저장수단, 그리고 회계의 단위로 기능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화폐는 금과 은처럼 물적 상품가치에 의해 그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실물화폐와 정부 법령이나 신용에 의해 지지되는 법정화폐(혹은 신용화폐)로 구분된다.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포괄하여 생각하면 현대적인 의미의 법정화폐 내지 신용화폐가 체계적으로 유통된 시기는 매우 짧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천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유통하고 사용하여 왔기에, 이러한 화폐사를 하나의 계통과 흐름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우리나라 사회경제사 연구에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다.<sup>1)</sup>

광복 이후 우리학계는 전근대시기보다는 근현대시기의 화폐사 연구에 다소 집중하여왔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이 광범하고 꾸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사에 대한 인식의 연장에서 우리나라의 화폐사를 혼란·혼돈·미성숙의 관점에서 평가해 온 경향이 강하다. 이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전근대의 역사상을 이 같은 관점에서 정리해 왔던 저간의 연구경향과도 상관된 동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은행이나 화폐제도는 미비하였으나, 당시 조선에서 포화(布貨) 등의 물품화폐나 준(準)명목화폐, 나아가 동전(銅錢)을 이용한 안정적인 상거래와 어음과 환을 이용한 신용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당시 개항 후 외세의 경제적 침투에 직면한 혼란 속에서 정부의 화폐 정책과 제도 수립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타의 상황 속에서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현대 화폐사를 다룰 때에는 우리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그 배경과 연원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최신의 연구 성과를 함께

---

1) 우리나라의 전근대 화폐사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전작인 박평식, 『한국화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고조선·삼국 ~ 조선후기』(한국은행, 2018))를 통해 정리한 바 있다.

반영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화폐관과 화폐인식을 토대로 한국 근현대 화폐사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개항기 이래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전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근현대 화폐사 연구의 동향을 (1) 개항 ~ 대한제국기, (2) 일제강점기, (3) 광복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항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시기는, 우리나라 화폐사에서 ‘근대’ 화폐의 유통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시기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포화(布貨)의 통용을 금지함에 따라 포화 중심의 조선전기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으며, 조선후기에 이어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화폐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그런 한편, 이 시기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 속에 대한제국이 화폐 자주권을 상실해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명암(明暗)의 역사를 우리의 시각에서 정리함으로써 이후 전개될 화폐사의 흐름을 보다 주체적으로 이해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일본이 진행했던 경제적 침투과정 및 강점 후 추진된 일제의 여러 화폐 정책 등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일제가 1904년 정리한 화폐 정리 사업과 그로 인한 조선의 금융 공황, 1910년 이후 일본 본토의 제국주의 경제에 종속된 사정 아래에서 일제의 각종 화폐 정책들의 추진에 따라 조선 사회에 야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화폐 자주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광복 이후의 시기에서는 해방 정국 시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금융제도를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국은행의 설립을 중심으로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광복 직후 일제하 제정된 금융관련 법령들과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이 존속하는 한편에서, 미군정이나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각종 법령을 공포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분단과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서 화폐제도와 화폐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한국 근현대 화폐사 연구의 현황을 개항기(국교확대기) 이래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리함으로써, 시기별 화폐경제의 성격과 단계를 규명하고 우리나라 화폐경제의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화폐관과 화폐인식, 특히 조선시기 화폐 정책과 화폐 유통,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이해 위에서 근현대 화폐사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폐경제의 발달 과정을 보다 계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각 장의 말미에서 국책기관인 한국은행에서 그간 발간해 온 역대 『한국화폐사』의 서술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어떠한 부분에서 개선이 가능할지에 관한 전망과 제언을 덧붙였다. 각 장별로 해당 시기의 내용을 정리함과 더불어 이를 가장 최근 발행된 『우리나라의 화폐』(2015)의 서술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본 책의 수정·증보 작업에 도움이 되는 근거 자료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II. 개항 ~ 대한제국기

상평통보의 전국적 보급은 국가 재정난을 완화하고, 상업 발달에 영향을 끼쳤으며, 동광 개발 및 주전(鑄錢)과 관련된 분야의 수공업 기술을 발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전과 미곡의 가치 차이를 이용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지주·상인·조세청부업자로부터 동전 수탈의 대상이 된 농민이 몰락하는 역기능을 수반하였다.

특히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경복궁 재건과 관련하여 고액화폐인 당백전이 발행되고, 이후 청전(淸錢) 등 중국 동전이 수입·유통되면서 조선의 화폐경제는 혼란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은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각국 열강들과 국교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일본과 청, 서양 열강 세력은 조선 화폐의 질서체계가 혼란한 틈을 타 자국의 화폐를 유통시키며 경제적 침투를 시작하였다. 이들 외국 화폐의 통용은 조선의 화폐 주권에 대한 위협이었으며 조선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내적으로 ‘화권재상(貨權在上)’<sup>2)</sup>의 기초를 유지하고 외적으로는 화폐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였다. 이 장에서는 개항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의 경제 상황, 통용 화폐 등 화폐경제의 전반적인 양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 1. 19세기 후반 화폐경제의 개황

#### 1) 개항 전후 화폐 가치의 하락

19세기 후반 조선의 화폐경제는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사상(私商)의 성장, 조세의 금납화(金納

---

2) ‘화권재상(貨權在上)’은 화폐의 주조와 유통을 국가에서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평식은 고려말 공민왕대의 화폐논의와 방사량의 상소에서 나타나는 화권재상의 인식을 정리하고, 이를 이 시기 사회경제의 여러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국왕과 국가가 주도했던 화폐론과 화폐 정책의 이념으로 정리하였다. 박평식, 「고려말기의 상업문제와 구폐논의」, 『역사교육』68, 1998 ; 박평식, 『조선전기 대외무역과 화폐 연구』, 지식산업사, 2018.



化), 고액전 발행에 따른 화폐경제의 혼란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농민층이 분해되는 등 문제가 증첩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침범 속에서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뒤이어 서양 열강들과 통상수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내적 혼란이 정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적으로도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중 조세의 금납화는 당시의 화폐 유통 사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조세의 금납화는 국가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sup>3)</sup>, 백성에게는 방납에 따른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며, 금속화폐를 전국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추진되었다.<sup>4)</sup> 금납화의 대상이 되는 세목과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화폐의 유통량과 유통범위 또한 확대되어갔으며, 이 같은 변화는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세의 금납화는 그 자체로 농민들이 국가 또는 지배층으로부터 화폐를 수탈당하게 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납세자가 국가에 화폐를 납부하는 기존의 재정적 화폐유통과 달리, 이른바 대전방납(代錢防納)이 성행하고 이 과정에서 중간매개자들이 납세자인 농민들로부터 화폐를 수탈하기 시작한 것이다.<sup>5)</sup> 특히 19세기 순조 연간(1800~1834)을 지난 뒤에는 수령을 책임자로 하는 지방관부가 주체가 되어 대규모의 조직적인 대전방납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도결(都結)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비합법적인 화폐수탈의 확대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길이었다. 즉 조세의 금납화는 농촌에서 화폐경제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재정 악화, 나아가 사회 분해를 촉진하기도 한 것이다.

고액전의 발행 또한 이 시기 경제의 혼란을 가져온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가장 먼저 발행된 고액전은 고종 3년(1866) 10월 발행된 당백전이었다.<sup>6)</sup>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재건 사업과 군비 증강을 위한 재원

3) 방기중, 「17·8세기 전반 금납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45, 1984.

4) 원유한, 『조선후기 화폐사연구』, 한국연구원, 1975.

5) 이해경, 「조선후기 조세금납화와 화폐유통에 관한 연구-전세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소논문집』22, 1992.

6) 최호진, 『한국화폐소사』, 서문당, 1974.

마련의 방편으로서 발행되었는데, 실질 가치는 상평통보의 5-6배에 불과했으나 액면 가치가 100배에 달하였다.<sup>7)</sup> 당백전이 발행되자 시장의 물가가 폭등했고 상평통보를 구축(驅逐)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당백전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이듬해 주조가 금지되었다가, 결국 고종 5년(1888) 10월에는 통용이 전면 중단되었다.

당백전 통용이 실패하고, 이후 시장에는 중국동전인 청전(淸錢)이 유통되었다. 정부가 1867년 당백전 주조 중단으로 부족해진 화폐공급을 청전 수입으로 메우려 한 것이다. 당시 도입된 가경(嘉慶)·도광(道光)·동치통보(同治通寶)는 통용가치가 상평통보의 액면 가치와 동일하였지만 실제 소재가치는 상평통보의 1/3수준에 불과한 악화였다. 청전은 1874년 유통이 금지되기 전까지 300~400만 냥이 수입되어 사용되었다.<sup>8)</sup>

본래 고액전의 유통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백성의 경제 활동에 타격을 입히는 위험이 수반되는 길이었다. 그러나 당백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후에도 재원 확보 및 주전 이익을 목표로 당오전 등의 고액전을 발행하였으며 유통화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금, 은, 동전과 지폐의 사용을 동시에 허용하였다. 당오전, 평양전 등 이 시기 발행된 화폐들은 모두 신뢰도가 하락한 악화들이었다. 이에 따라 악화와 상평통보가 지역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화폐 유통의 이중구조가 형성되거나,<sup>9)</sup> 때에 따라 주화의 용해, 위조, 사주(私鑄)가 성행하였다.<sup>10)</sup> 결국 정부의 이러한 주전책(鑄錢策)은 개항 이후 재정난의 심화, 정부의 행진책(行錢策)에 대한 민간의 불신 야기, 화폐 가치의 하락과 물가 폭등 등의 경제난으로 이어졌다.

7) 김희호, 이정수는 당백전이 그 이름과는 달리 액면 가치가 상평통보의 20배이며, 상평통보의 평균 주조 이익률이 13.7%였으나, 당백전은 360%, 당오전은 1.2%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희호, 이정수, 「근대조선 화폐개혁과 화폐량 추정」, 경북대 경제세미나 발표문(2017)).

8) 원유한, 「당오전고」 『역사학보』35·36, 1967 ; 김희호, 이정수, 「1865~1910년 국제 금본위제도와 근대조선의 화폐량 추정」 『역사와 경계』108, 2018. 김희호와 이정수는 일본 외무성 통상국이 편찬한 『통상위찬(通商彙纂)』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 내 청전과 일본 은화, 제일은행권 등 각종 외화의 유통량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892년 백동화 발행 이후 화폐단위 1원=5냥의 공식 비가를 적용하여 10냥=1관=2원으로 환산, 화폐량을 추정하였다.

9) 고승제, 「이조말기 화폐위기의 분석」 『서울대논문집』2, 1955; 원유한, 위의 논문, 1967; 오두환, 「당오전연구」 『경제사학』6, 1983.

10) 김희호, 이정수, 위의 논문, 2018.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개항 이후 외국화폐가 유입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조선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청·서양 열강과의 대외무역을 전개하였다. 각국과의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조선에는 다양한 외국화폐가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개항 초기, 일본인 거주지에서의 사용이 허가된 일본 태환권(兌換券)과 일본 1원(엔) 은화는 일본 상인의 활동과 거주지가 확장되어감에 따라 사용이 확대되었다. 1878년에는 부산 거주 일본인들을 위한 환전과 금융 업무를 위해 일본의 제일은행이 설립되었다.<sup>11)</sup> 이후 미국(1882), 영국(1884), 러시아(1885), 이탈리아(1886), 독일(1886) 등과 잇달아 수교하면서 다양한 외국 화폐가 유입되어 쓰이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통용되던 일본 은화 외에도, 중국의 마제은(馬蹄銀), 러시아의 루블화, 멕시코 은화 등이 유통되었다.

중국의 마제은은 신의주에서의 중국무역을 통해 유입되었고, 멕시코 은화는 미국과 무역을 하던 청 상인 또는 일본 제일은행을 통하여 조선에 유입되었다. 일본 은화(엔화)는 일본인 거주자의 비용과 조선을 상대로 한 무역에 사용되었으며, 러시아의 루블화는 조선에 주둔하던 러시아 군대의 경비사용을 위하여 유입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 은화는 유통량이 컸는데, 1887년부터 대한제국이 성립한 1897년 사이 조선에서 유통된 일본 은화는 대략 300만~350만원(1,500만~1,750만냥)으로 추정된다.<sup>12)</sup>

이후 일본화폐의 유통량은 대한제국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제 침투 속에서 제일은행권 발행 등 일본화폐량이 급증한 것이다. 일본 제일은행권은 1902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하다가, 일본이 주도한 화폐정리사업(1904) 이후 법정화폐로 지정되며 발행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통상회찬(通商彙纂)』<sup>13)</sup>의 기록을 통해 일본 제일은행권의 발

---

11) 일본은 자국민 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1878년 부산에 제일은행 지점을 개설한 이후 원산(1880), 인천(1883), 경성(1888), 목포(1898)에 지점을 확대하였다. (村上勝彦, 「第一銀行朝鮮支店と植民地金融」 『土地制度史學』61, 1973).

12) 김희호, 이정수, 위의 논문, 2018.

13) 1894년부터 1913년까지 일본 외무성 통상국이 세계 각 지역 일본영사관에서 보고 받은 통상 관련 사항을 편집해 간행한 역사서이다.

행량은 1902년에 703,358원, 1903년에 870,126원, 1904년에 3,378,776원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평통보, 당오전 각종 외국화폐까지 통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여러 화폐들을 환전해주는 환전객주(換錢客主)도 등장하였다.<sup>14)</sup> 환전객주는 상평통보와 당오전 등 조선의 화폐들 간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여 교환해주는 금융업 전문객주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엔화, 달러나 마르크 등을 조선의 화폐로 교환해주는 환전상도 활약하였다. 이는 외국화폐의 유통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었다. 1893년 조선을 여행한 마에트, 1894년의 헤세 바르텍 등의 기록에서 당시 달러와 상평통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표현되어 있다.<sup>15)</sup> 또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긴 저서에도 여행 중 제천의 마교 장터에서 일본 화폐를 상평통보로 환전하였던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 환전 업무는 전국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이와 같이 개항 이전 사회의 화폐경제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조세의 금납화와 상평통보의 사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화폐 사용이 확대된 근대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조선후기 부세체계의 문란과 토지와 부의 편중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 이로 인한 농민층의 분화 등에 주목한다. 또한 그 원인을 분석함에 조선정부의 정치적 무능과 연결 짓는 경향이 짙다는 특징이 있다.

개항 후 다양한 외국 화폐들이 통용되던 상황에 대해서는 부족한 자료를 이용하여 당대 사용된 화폐의 종류, 유입 배경, 유통 지역 등 세부적인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다. 개항 전후 조선의 경제 질서에 대한 통시적 사고 위에서 외국화폐의 유입을 분석하기보다는 주로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경향은 당시 조선이 처한 시기적 특수성이나 국제적 상황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세도정

14) 고동환, 「조선후기~한말 신용거래의 발달-於音과 換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13, 역사문화학회, 2010.

15) 김영자 편, 마에트, 「금속활자의 열매는 어디에-1883년」; 헤세 바르텍,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1894년」, 『100년 전 유럽인이 유럽에 전한 조선왕국 이야기』, 서문당, 1987.

16)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옮김, 『백년전 한국의 모든 것, 한국과 이웃나라들』, 살림, 1994.

치기 동안 부세제도가 급격히 해이해지고, 민들의 저항이 커졌으며, 정부의 연이은 고액전 발행으로 화폐체계가 혼란해진 것 등은 모두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의 물결이 범람하던 시기이자 조선 경제에 일본 및 서구열강이 침투하던 시기였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화폐경제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대내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화폐가 혼재하던 19세기 후반의 상황도 당시에는 시장질서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으나, 국가가 완전한 명목화폐를 사용하는 경제적 단계로 이행하는 제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조선 정부가 각 지방 관청에 동전의 주전권을 부여했던 점 역시 일원화된 화폐 발행 체계의 미비로서만 보기보다, 지방 재정의 확보와 행전을 위한 국가의 방편이었음을 감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 신용경제의 양상

조선후기에는 비록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적 화폐 체계와 은행제도 등이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상업에서 신용에 토대를 둔 상거래가 활성화 되었고 환(換)과 어음(於音)제도가 발달하였다. 이는 화폐 체계의 과도기적 양상과는 별개로 조선후기 상업이 신용 기반의 거래가 운영될 만큼 질적 발달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18세기 이후 개성상인을 중심으로 발행, 유통되었던 어음과 환은 19세기 이후 일반 상거래에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sup>18)</sup> 어음은 신용거래

17) 어음과 환을 중심으로 한 신용거래의 실태에 대해서는 홍희유가 『조선상업사』에서 처음 언급하였다. 그는 개성상인이 남긴 『사개송도치부책』과 북한 사회과학원에 소장된 『타급장책』을 분석하여 환과 어음이 18세기 후반 광범하게 사용되었으며, 환이 어음에 비해 거래규모가 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홍희유, 『조선상업사-고대중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이 장에서는 환과 어음에 대한 고동환, 전성호 등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고동환, 앞의 논문, 2010; 전성호, 「조선후기 환於音 거래 분석(1887-1900) : 박영진가 회계장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8, 2011.)

18) 어음은 종이 중앙에 ‘출문(出文)’ 또는 ‘출전(出錢) 몇 냥(兩)’ 이나 ‘출급(出給)’ 또는 ‘출차삼(出次三)’ 이라고 기입하여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대체로 어음의 오른쪽 또는 왼쪽의 윗부분에 작성한 날짜를, 그 아랫부분에 채무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의 징표로 발급된 증권으로 어험(魚驗)으로 불리었다. 어음은 크게 출급여음(出給於音)과 임치어음(任置於音)의 두 종류가 있었다. 출급여음은 상품 구입 시 금전 대신 발행하는 것이었고, 임치어음은 금전을 예치한 경우 그 증서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지급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 임치어음의 경우는 상인들의 어음할인이나 어음매매에 주로 활용되었다. 1901년에서 1905년 사이에 발행된 어음들은 하나의 어음 당 기재 액수가 1만 냥에서 5만 냥 사이였다. 어음에는 발행한 사람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음의 인수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음은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였으나 지불기일이 길어야 1~2개월이었으므로, 2~3회의 양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이전 교부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였다. 또한 어음은 일종의 신용화폐였으므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차하기도 하였다.

어음이 중소기업과 소생산자 사이에 널리 유통되었다면, 환은 대상인들 사이에서 주로 유통된 신용환표였다. 환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금전거래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미리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된 범위 안에서 발행하는 신용거래 형태였다. 어음과 달리 환은 인수인이 특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환을 발행할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기록한 편지글[환간(換簡)]과 함께 환표를 발행하였다. 환과 어음은 기능이 서로 중첩되면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환은 발행할 때마다 환거간(換居間)이 있어 중개했으며, 수수료와 이자도 지불하였다. 19세기의 환 거래의 범위는 소규모 읍단위까지 확대되었으며, 액수 규모는 대체로 200냥에서 1,500냥 사이였다.

어음과 환은 상거래 외에도 임금 지불, 여행 중 경비지출, 국제교역의 결제수단, 매관매직시의 지불수단, 조세상납 및 국가재정운용에서도 활용되었으며 일상생활의 금전거래 전 분야에 걸쳐 활용되었다. 심지어 죄수들의 속전납부나 강탈한 재물의 보관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신용을 기반으로 한 환거래 등은 개성상인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

---

날인하였다. 일단 어음이 작성되면 어음의 가운데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절단하여 채무자의 기명이 있는 쪽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한 쪽을 채무자가 보관하였다.

으로 추정된다.<sup>19)</sup> 전국 각지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상업을 운영했던 개성상인들은 무거운 동전을 운송하는 것보다 신용에 기반한 편리한 상거래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어음과 환이라는 신용화폐의 유통 결과, 이를 담보로 금전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어음교환소가 출현하였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육의전 역 인칭(六矣廳 力人廳)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이곳에서는 어음의 교환, 할인, 담보대출 등을 맡았으며, 은행이라는 간판을 달지는 않았으나 실질적 업무 수행의 영역이 은행과 마찬가지로였다.

조선 후기 신용 기반 거래 중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제도로서 시변제(時邊制)가 있다. 시변제란 개성상인간에 이루어진 무담보 저금리 신용대출로서, 개성지역에서만 이루어진 독특한 민간금융제도이다.<sup>20)</sup> 시변제는 환 중개업자를 통해 시장의 원리에 따라 그 때 그 때의 시세에 맞추어 이율을 정하고 자금을 신용으로 대여 및 결제하는 방식의 제도이다.<sup>21)</sup> 시변의 특징은 자금의 대여자와 차용자 중간에 중개인을 개재시켜 필요 자금을 융통하는 제도로서, 여기에 하등의 물적 담보가 요구되지 않았으며 절대적으로 신용에 의하여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민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통괄하는 관영기관은 없었으며 대차 당사자와 중개인 이외에는 거래 사실이 비밀에 부쳐졌다. 시변거래를 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거래 이외의 사항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변 운영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개성에서 이루어진 정확한 시변 거래액은 알 수 없으며 추정만 할 뿐이다. 1929년 개성의 영업세 부과 액수를 미루어 추산할 경우 연간 융통고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

---

19) 홍희유, 앞의 책, 1989.

20) 시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였음. 오성, 「한말~일제시대 開城의 時邊制」 『한국근현대사연구』 21, 2002; 양정필, 「근현대 개성상인의 경제조직 시론 - 3대 상업제도와 3대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0, 2008; 전성호, 「개성 시변제도 연구 - 개성상인 회계장부 신용거래 분석(1887~1900)」 『大東文化研究』 75, 2011.

21) 時邊制의 ‘邊’이란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금전 대차를 시변 또는 장변등의 명칭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개성의 시변은 이러한 시장에서의 대부와 달리 별개의 민간조직에 의해 운영되었다. 조선식산은행조사과, 『개성의 시변』, 1929, 11-13쪽; 오성, 위의 논문, 2002, 80-81쪽에서 재인용.

대 800만원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요컨대 시변제는 신용을 토대로 개인 간에 이루어졌던 극히 간단한 대차제도로써, 근대적 금융기관이 성립되기 이전 화폐와 금융의 융통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사금융제도(私金融制度)였다. 또한 그 시행 지역은 개성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식민화 작업에 착수하고, 근대적 금융기관인 은행과 금융조합이 설립되면서 시변제도는 활동의 상당 부분을 침해당하기 시작하였다. 시변자금에 대한 영업세 부과 등 식민지 정책이 강화되자 시변제의 기능과 비중은 자연히 쇠퇴해갔다. 시변제는 우리나라 자체의 상업 발달 지표를 짐작할 수 있는 신용거래 제도였으나 일제의 침탈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 시기 환, 어음, 시변제 등 상업제도에 대한 연구의 특징은 화폐경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조선의 상거래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후기 신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사상의 활동, 자금 융통, 환전 업무 등은 당시 화폐 체계의 혼란과는 별개로 조선의 고유한 특성과 전통 속에서 발전하여갔다. 특히 환과 어음은 오늘날과 같은 화폐제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금속화폐가 갖는 불편함을 보완하며 원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능하였다. 조선후기의 이러한 신용거래의 양상을 바라볼 때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후진과 미성숙의 범주로 치부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근대 은행과 은행권이 발달·성립해가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단계적인 양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개항 후 은행<sup>22)</sup> 설립론과 전환국의 설치

조선에 최초로 설립된 은행은 고종 15년(1878)에 설립된 일본 제일은행(第一銀行) 부산지점이었다. 제일은행은 이후 원산(1880), 인천(1883), 한성(1888) 등으로 출장소·지점을 확대하였으며, 일반은행 업무 외에도 해관세 취급(1884), 지금은(地金銀) 매입, 차관 제공, 국고급 취급을 담당하였다. 또한, 제18은행(第十八銀行)이 인천(1890), 원산(1894)에, 제58은행(第五十八銀行)이 인천(1892), 부산(1893), 한성(1894)에 지점을 설치했다.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전까지 조선에서 영업한 은행은 모두 일본인 은행이었으며, 주요 업무는 일본인 상인의 무역·상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sup>23)</sup>

일본계 은행들의 활동은 조선 정부와 민인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은행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는 고종 18년(1881) 메이지 일본의 발전상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하였던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조사들이 둘러본 시설 중에는 제일국립은행, 미쓰이[三井]은행도 있었다.<sup>24)</sup> 대장성 사무 조사를 담당한 어윤중(魚允中)은 귀국 후 『재정견문(財政見聞)』 등을 작성하여 고종에게 보고했는데, 『재정견문』은 메이지 유신(1868) 이후 메이지 14년(1881)까지 일본 정부가 국내 반란 세력을 진압하면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한 과정을 세입세출·지폐·국채·조세·은행·정부재산·실적 등 7장으로 나누어 분석한 한국 최초의 일본 경제 분석서라 할 수 있다.<sup>25)</sup>

22) 일본에서 은행(銀行)이라는 명칭은 Bank의 번역어로서, 국립은행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18세기 초에 전장(錢莊), 금은포(金銀鋪) 등과 비슷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은행이라는 명칭을 쓴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는 1880년대부터 1890년대 중반까지 은행과 은호(銀號)가 같이 쓰이다가 1890년대 후반부터 은행으로 통일되었다. 은호는 중국의 전장과 비슷한 전통 금융기관이다(정병욱, 「한말·일제초기 은행설립론과 국가·상인」, 『한국사학보』 17, 2004, 148쪽의 註 6). 이 장의 내용은 정병욱의 이 글을 주로 참고하였다.

23) 위의 글, 148쪽. 1884년 세관 업무가 제일은행에 위탁된 뒤부터는 인천, 부산, 원산의 감리서 또한 각종 경비의 조달, 여유 경비의 보관에 제일은행을 이용하였다.

24) 위의 글, 148~149쪽.

25) 허동현, 「어윤중, 수문록·재정견문」 『한국사 시민강좌』42, 2008, 113쪽. 어윤중이 경제와 재정 문제에 집중한 것은, 당시 조선의 세입이 1800년대 초의 1/10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무척 어려웠기 때문이다. 위정자들은 일본이 단행한 경제제도 개혁과 산업진흥정책이 거둔 결과, 국가 재정에 미친 영향에 관심이 컸다.

어윤중은 일본에서 메이지 5년(1872) 「국립은행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여러 국립은행이 설립된 사실을 지적하고, 메이지 정부가 유신 이후 외교·무역으로 주의(主義)를 정하고 세사(世事)가 조금 안정되자 인민들이 상업과 물산에 뜻을 품기 시작했으나 금은이 유통되지 않고 자본이 핏소(乏小)한 듯했기 때문에 은행을 설립해 금은의 유통을 편하게 했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자본이 핏소하고 금융이 폐색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사족이 서로 이로운 방책을 피하여 사족들이 공채증서를 저당 잡혀 국립은행을 창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은행 설립 자본으로 공채를 동원한 점도 파악하였다.

이후 고종 31년(1894) 경까지 조선 정부에 은행 설립을 건의한 사례로 고종 19년(1882) 거경(居京) 유학(幼學) 고영문(高穎聞)의 상소, 동왕 25년(1888) 박영효의 상소, 그리고 조금 늦은 시기이지만, 동왕 32년(1895) 원외랑(員外郎) 정인목(鄭寅穆)의 상소를 들 수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一. 법에 따라 채광하고 연수 제한 없이 삼폐(三幣)를 계속 유통시켜 화폐를 씹듯 유통되게 함으로써 유식자(遊食者)가 없는 것이 재화를 생산하는 요체이다. …

一. 힘써 급히 상회(商會)와 국립은행을 도성 안에 세우고 경상대고(經商大賈)를 불러모아 이익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세금을 거둬 이익에 따라 덜고 더하여 대소 유민으로 하여금 뜻과 힘으로 먹고살게 한다.<sup>26)</sup>

[나] 금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상품의 유통과 매매를 편리하게 해야 한다. … 상사(商社)와 은행을 설립하여 저축과 무역을 편하게 해야 한다.<sup>27)</sup>

[다] 一. 지폐를 발행하여 이웃나라에서 곡식을 구함으로써 부고(府庫)를 가득 채워 기근에 대비할 것.

一. 은행을 설립하여 민으로 하여금 충족히 장사하게 할 것 …<sup>28)</sup>

26) 『日省錄』 제260책, 고종 19년 9월 22일조.

27) 『朴永曉建白書』 25~26, 35~36쪽.

28) 內閣編, 『上疏存案』 2-2, 2895.

이들 상소에서 언급되는 ‘은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모호하지만, 이들 삼자는 ① 화폐를 충분히 발행하여 민간에 유통시키고, ② 은행을 설립하여 상품의 유통과 매매, 저축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견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고종 18년(1881)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갔다가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된 유길준(俞吉濬) 또한 고종 26년(1889) 탈고한 『서유견문(西遊見聞)』 「화폐의大本(大本)」에서 정부가 은행국을 설치하여 지폐를 발행하는 제도를 권장하였다.<sup>29)</sup>

비록 이들이 건의한 은행 설립은 당시에 곧바로 실현되지는 못했으나, 고종과 정부는 은행 설립을 ‘절요시무(切要時務)’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890년경이면 외채에 의한 은행과 교환소의 설립, 은화 발행과 그에 기초한 지폐 발행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 19년(1882) 전술한 고영문의 상소가 있기 전에 고종은 자신이 작성한 「선후사의육조(善後事宜六條)」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 상국(商局)을 설립하고 금은화폐와 지폐를 동전과 겸용하게 한다는 방안을 청에 전달했고, 이에 청의 리홍장[李鴻章]은 조선과 청의 부상(富商) 자금을 동원하여 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듬해 상설 조폐기구 전환국(典圜局)을 설치한 것은 신식 화폐의 발행을 통제·장악함으로써 재정을 확충하려 한 정부 의지의 산물이었던 한편, 당시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의 협판(協辦)으로 초빙되었던 독일인 뮐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f)의 영향도 있었다. 뮐렌도르프는 리홍장의 추천으로 통리아문의 협판이 되었는데, 전환국이 설치된 후에는 총주(總鑄)의 일을 겸무하기로 했다. 뮐렌도르프를 총주에 임명한 것은 그로 하여금 독일에서 신식 주전기(鑄錢機)와 기술자를 도입하도록 하여 신식 화폐를 주조하자는 뜻에서였다. 고종은 전환국에 명하여 은·동화를 주조하게 하고 교환국을 설치하여 엽전과 당오전을 서로 통용케 하였다.<sup>30)</sup>

그러한 가운데, 고종 28년(1891)에는 전환국 방판(幫判) 안경수(安駟壽)의 주선으로 일본인 소다 노부유키(曾田信之)와 오오미와 초베(大三輪長兵衛)를

29) 원유한, 「구당 유길준의 화폐사상」 『尹炳奭教授華甲紀念韓國近代史論叢』, 지식산업사, 1990.

30) 박준재, 「한말 전환국의 사적 고찰」 『經濟史學』, 1980, 27쪽.

초빙하여 「대조선국 화폐조례」를 제정하였다. 안경수는 본래 엽전 주조의 건과 관련하여 오사카에 건너가 제5은행 행장 오오미와 초베를 만났는데, 오오미와가 다시 오사카 제강회사 사장 소다를 소개하였다. 이때 소다는 서양식 화폐의 유리함을 피력하면서, 일본 화폐와 형상, 중량, 품위 면에서 같은 신식 화폐를 만들 것을 강하게 권하였다. 또한, 안경수의 엽전 주조안이 자금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방안임을 파악하고, 자금 대부분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때 빌린 자금이 결국 일본 정부로부터 기증 받은 것인데다, 대부 조건으로 전환국의 감독을 소다에게 위임한 결과 전환국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일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조선국 화폐조례」에 따라, 이듬해 말까지 약 23만 원(圓)의 은화가 주조되었으나, 해당 조례는 소다와 오오미와의 이해관계 충돌, 청의 간섭 및 엽전 주조 이권을 장악하고 있던 정부 내 세력의 반대에 의하여 실시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 버렸다.<sup>31)</sup>

### 3. 화폐제도의 ‘개혁’ 과 대일 종속성의 심화

#### 1) 일본인의 화폐제도 ‘개혁’ 요구와 신식화폐발행장정

개화파 지식인을 중심으로 은행을 설립하자는 건의가 적극 개선되고 고종 정부 또한 신식 화폐를 발행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적 침략은 거세지고 있었다. 특히,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상인들은 상업상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조선의 화폐제도를 ‘개혁’ 하고 일본 화폐를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방안을 요구하였다. 고종 19년(1882),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된 이후 청의 상인이 팔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일본인 상인의 상업적 이익을 위협한데다가, 당오전(當五錢)과 평양전(平壤錢) 등 악화가 남발되면서 엽전의 유통가치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자 일본 상인의 수입 무역도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화폐제도를 일본의 화폐제도에 연결된 형태로 개편하여 화폐가치를 안정시키는 한편 일본 화폐의 자유 유통을 도모하였다.<sup>32)</sup>

31) 도면희, 「갑오개혁 이후 화폐제도의 문란과 그 영향(1894-1905)」 『韓國史論』21, 1989, 382쪽.

이처럼 기존 화폐제도의 개혁은, 당오전과 평양전의 폐해를 제거하고 ‘근대적’ 화폐제도를 확립하려 하였던 당시 개화파 정부의 입장에서나, 수출입 무역과 군수비 마련 등 경제적·군사적 침략을 추진하고 있었던 일본 입장에서 모두 필요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우선 개화파 정부는 「신식화폐발행장정」 반포 사흘 전인 7월 8일(음력) 당오전·평양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제출하여 고종의 재가를 받았다.

근래 화폐계산법이 문란해져 마침내 당오전과 엽전 사이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오전 내에 엽전을 섞거나 엽전을 당오전처럼 통용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마땅히 엄명을 내려 엽전은 반드시 100文을 1냥으로 칭하도록 하고 당오전 내에 엽전을 섞어서 사용하면 그 당오전은 엽전과 같은 단위로 확실히 계산하여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각 지방과 서울에서의 상납 및 지출은 지금부터 즉시 모두 엽전 단위로 계산하도록 명령하시고 평양 주전소도 역시 폐쇄시키는 것이 어떠합니까?<sup>32)</sup>

이 조처의 핵심은 당오전과 엽전을 섞어서 사용할 경우, 그 당오전을 액면가인 5문이 아니라 엽전과 동일한 1문 가치로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화폐 혼용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조처를 취한 후, 7월 11일(음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식화폐발행장정」(이하 「장정」)을 반포하고 7월 20일부터 시행할 것을 내외에 알렸다.<sup>34)</sup>

**제1조 (신식화폐의 종류)** 신식화폐는 은화, 백동화, 적동화, 황동화 등 4종으로 나눈다.

**제2조 (신식화폐의 단위)** 화폐단위의 최저는 분(分)으로 하며 10분을 전(錢), 10전을 냥(兩)으로 한다.

**제3조 (신식화폐의 등급)** 화폐는 5등급으로 나눈다. 최저 1분은 황동화, 다음 5분은 적동화, 다음 2전 5분은 백동화, 다음 1냥 은화, 그리고 5냥 은

32) 위의 글, 383쪽.

33) 한말근대법령자료집 제1권, 개국 503년 7월 8일조.

34) 한말근대법령자료집 제1권, 개국 503년 7월 11일조. 아래 괄호 안은 필자 작성.

화를 최고 등급으로 한다.

**제4조 (본위화와 보조화)** 5냥을 본위화로 삼고 1냥 이하는 모두 보조화로 삼는다. 1냥 은화로 거래할 때는 1회에 1백 냡을 한도로 한다. 백동화 이하의 화폐로 거래할 때는 1회에 5냥을 한도로 한다. 단, 거래자끼리 상호 허락할 때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신식화폐와 구식화폐)** 신식·구식화폐를 모두 통용시켜 유통을 넓히며 그 비례는 다음과 같다.

- 1푼 황동화는 구엽전 1매                      - 5푼 백동화는 구엽전 5매
- 2전 5푼 백동화는 구엽전 25매            - 1냥 은화는 구엽전 100매
- 5냥 은화는 구엽전 500매

**제6조** 은화로 수입 지출하기로 한 각종 항목의 조세 및 봉급은 가능한 한 은화를 사용하되, 형편에 따라서는 구엽전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구엽전을 사용하기로 규정된 것은 제5조의 비례를 따른다.

**제7조 (외국화폐의 혼용)** 신식화폐를 다액 주조하기 전에 잠시 동안 외국 화폐를 혼용할 수 있다. 단, 본국 화폐와 동질(同質), 동량(同量), 동가(同價)인 것만 유통시킨다.

이 「장정」의 반포를 계기로, 조선도 청·일본과 같은 은본위 화폐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화폐 단위 역시 두 국가와 유사한 체계를 갖게 되었다. 내용으로만 보면, 「장정」은 조세 금납화와 함께 상품 화폐경제의 확대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대적’ 화폐제도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정」의 실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다.

첫째, 조선 정부는 본위화인 5냥 은화를 다량 주조할 만큼의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제7조에서 신식 화폐와 동질·동량·동가인 외국화폐, 곧 일본 화폐의 국내 자유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일본 화폐의 유통과 신용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 화폐경제의 대일 종속성을 야기하였다. 그 후 조선의 화폐경제가 일본 화폐의 유통량 증감에 좌우되어, 실제로 고종 35년(1898) 일본의 금본위제 이행 이후 조선에서 원은과 일본 지폐가 대량 유출되자 조선은 본위화 부족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 화폐의 자유 유통은 일본의 상권 확대를 도와줌으로써 결국

일본 자본주의의 경제적 침략을 가속화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 2) 국내 은행의 설립과 일본 제일은행의 진출

비슷한 시기, 은행 설립을 가정한 조직과 업무의 분장도 이루어졌다. 고종 31년(1894) 6월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중앙관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재정 담당 관청인 탁지아문(度支衙門) 아래에 ‘은행국(銀行局)’을 두어 “국내 공사(公私) 화폐의 태환(兌換)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화폐주조를 관장하는 전환국장(典圜局長)이 은행국장(銀行局長)을 겸임하게 하였다. 이듬해인 동왕 32년(1895) 4월 을미개혁(乙未改革) 때 탁지아문이 탁지부(度支部)로 바뀌면서 은행국은 폐지되었으나, 대신 사계국(司計局) 감사과(監査課)의 업무 중에 “은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출납국 금고과의 「금고규칙(金庫規則)」 제3조에는 “정부의 감독을 수(受)하는 은행 회사 등으로 하여금 금고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한다고 되어 있었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1년 남짓의 간격을 두고 진행되어 시기적으로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성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sup>35)</sup> 갑오개혁에는 조선 개화파 인사들의 구상이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었으나, 을미개혁은 그 추진 시기[을미사변(乙未事變) 직후]와 내용[단발령 등], 방식 등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 일본의 침략적 의도가 다분히 반영되었다.

은행 관련 측면을 보면, 갑오개혁 때의 ‘은행국’이 ‘공사 화폐의 태환 업무를 관장’하는 등 화폐 주조 및 발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면, 을미개혁 때의 ‘은행’은 화폐발행과 관련된 언급 없이 조세의 수취와 금고 사무에 방점이 놓여 있었다. 이는 갑오개혁 추진 세력이 「장정」에서 외국화폐의 통용을 인정하면서도 지키려 했던 화폐주권의 실현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당시 일본이 차관 공여를 조건으로 조선 정부가 지폐 발행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영효·어윤중 등 개화파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었다.<sup>36)</sup> 장차 화폐주권을 탈취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35) 1894년(고종 31) 7월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 동안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을 넓은 의미의 갑오개혁이라고 하며 그 중 제3차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도 한다.

36) 오두환, 『韓國近代貨幣史』, 한국연구원, 1991, 144~146쪽.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앙관제에서부터 은행 관련 조직들이 구성되어 오는 가운데, 고종 34년(1897) 대한제국이 성립한 이후부터는 조선은행(1897), 한성은행(1897), 대한천일은행(1899) 등 정부 관료들과 서울·경기 지역 대상인들이 함께 설립한 은행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이들 은행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특권은행을 지향하면서, 실제 조세 금납화에 따른 국고 업무를 담당하고 국고금을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들 은행은 일본 국립은행을 모델로 삼고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특권인 은행권 발행을 승인 받지 못했는데, 이는 고종이 ‘화권재상(貨權在上)’의 전통적인 인식 아래 민간 은행과 별도로 독자적인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7)</sup>

그러한 가운데, 고종 15년(1878)부터 부산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제일은행은 조선에서 개항장이 열릴 때마다 지점과 출장소를 증설하면서 (아래 표) 조선의 금융을 잠식해 나가고 있었다.<sup>38)</sup>

〈표 2〉 제일은행의 지점 출장소 설치년도

개업년월	지점, 출장소	개업년월	지점, 출장소
1878. 5	부산 지점	1904. 3	평양 지점
1880. 5	원산 지점	1905. 4	대구 출장소
1883. 11	인천 지점	1905. 6	성진 출장소
1888. 10	경성 지점	1905. 7	개성 출장소
1899. 8	목포 출장소	1906. 2	마산 출장소
1903. 2	진남포 출장소	1906. 2	합천 출장소
1903. 2	군산 출장소	1907. 4	충성 출장소

비고: ① 원산지점은 일시폐쇄했다가 1904년 11월에 출장소로 개업, 1906년 2월 지점으로 승격함

② 인천지점은 출장소에서 1888년 9월에 지점으로 승격함

③ 경성지점은 출장소에서 1903년 2월 지점으로 승격함

④ 평양지점은 출장소에서 1906년 2월 지점으로 승격함

출전: 『株式會社第一銀行韓國各支店出張所開業以來營業狀況』 p. 1  
第一銀行, 『韓國ニ於ケル第一銀行』 pp. 384~385

37) 정부는 1898년 후반부터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 러시아, 벨기에 등으로부터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중앙은행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며, 1902년 경부터는 기존의 민간은행을 황실이 인수 경영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도면희, 갑오개혁 이후의 근대적 금융기관, 『국사관논총』 77, 1997, 114-120쪽 참조).

38) 金才淳, 「露日戰爭 직후 일제의 화폐금융정책과 조선상인층의 대응」 『한국사연구』 69, 1990, 131쪽.



나아가, 제일은행은 고종 39년(1902) 5월부터, 그동안 해관은행(海關銀行)으로서 발행한 해관어음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의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발권은행의 권리를 획득함에 따라, 제일은행은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한국의 중앙은행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다.

#### 4. 일제의 화폐정리사업과 금융공황

1904년 2월 초 러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을 축출하기 시작한 일제는, 1904년 5월에 이르러 대한제국의 군사·외교·재정·교통·통신과 농업을 비롯한 제반 사업에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방침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대한제국 정부를 강압하여 재정·외교 분야에서 일본 정부가 추천한 고문(顧問)을 용빙(傭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한일협약(1904. 8. 22.)’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14일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가 재정고문으로 취임하였는데, 그는 다음 조항에서 보이듯 사실상 대한제국의 재정권을 장악하였다.

대한국정부(大韓國政府)는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메가타 다네타로 [目賀田種太郎]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행한다. ... (중략) ...

의정부(議政府)의 결의와 각 부의 사무로서 재정에 관계가 있는 것은 상주(上奏) 전에 메가타 다네타로의 가인(加印)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외무대신의 지휘를 받는 재정고문 메가타를 통해 대한제국의 재정을 감독할 뿐 아니라 그 집행 권리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메가타가 ‘재정정리’의 명목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1904년 11월 전환국의 폐쇄로부터 시작된 ‘화폐정리사업’이었다. 메가타는 재정고문으로 취임하자마자 조선 재정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화폐제도의 문란’을 거론하였는데, 이는 곧 보조화인 백동화(白銅貨)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을 이르는 것이었다. 당장 정부에서부터 극도로 악화된 재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조 이익이 높은 백동화를 특주(特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민인은 물론 외국인들조차 백동화를 사주(私鑄)하여 주조 이익을 추구하였다.<sup>39)</sup> 이처럼 위조 백동화가 범람함에 따라 1898년을 전후로 백동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1905년 직전에는 1/2 수준에 이르렀다.

백동화의 남발은 전국의 화폐 유통권을 아래 <지도 1>에서 나타나듯이 백동화와 엽전 유통권으로 분열시키면서 화폐경제의 발전을 교란하는 한편, 화폐의 신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근대적’ 금융기관인 은행의 출현과 발전에도 질곡으로 작용하였다.<sup>40)</sup>



39) 1894년부터 1904년 11월에 이르러 전환국이 폐쇄되기 전까지 전환국에서 발행한 각종 신화폐의 주조액수는 18,960,658.872元이었는데, 이 중 분위화인 5兩銀貨는 19,923元, 백동화는 16,743,522.65元으로서 전자가 0.1%임에 반해서 후자는 88.3%를 차지하였다.

40) 金才淳, 앞의 글, 126-127쪽.

한편, 이러한 상황은 조선인과 무역, 거래를 하는 일본 상인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였다. 경성 일본영사관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입품의 매매는 일본 화폐[日貨]를 표준으로 시가(市價)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수입품에 대한 최대고객인 한인(韓人)에게는 한국 화폐[韓貨, 백동화]로 거래하는 관습으로서 더구나 한국 화폐의 유통가격은 변동이 격심하고 일본 화폐에 대한 비가(比價)는 거의 날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도 역시 수시로 변동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중략) 하루 아침에 한국 화폐가 폭락하면 갑자기 수입품의 호가(呼價)를 폭동시키고 그 판로를 방해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sup>41)</sup>

이에 메가타는 1904년 11월 백동화 주조기관인 전환국을 폐쇄시키고, 동년 12월 31일 고종을 배알하여 “금후 폐제(幣制)정리 및 금고설치의 사항은 고문과 탁지부대신이 스스로 자진해서 이를 담당하라”는 칙령을 내리도록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부터는 일본 제일은행을 한국의 중앙은행으로 합법화시키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한국정부로 하여금 화폐정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제일은행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그 위임 계약에 “대한국정부는 제일은행권을 공인하고 공사의 거래에 지장 없이 무제한으로 통용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강요하여 제일은행권을 공식적인 법화(法化)로 인정해 버렸다.

동시에 메가타는 당시 한국에서 유통되던 백동화와 엽전을 신화폐로 교환하는 화폐정리사업 또한 추진시켜 나갔다. 1904년 11월 전환국 폐쇄 직후에 세운 「화폐정리방침」에서는 “한국화폐제도의 성패에 최대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국이다. (중략) 한국화폐의 기초 및 발행 화폐는 완전히 일본과 동일하게 한다”고 규정했으며, 이를 일본 외무성 및 대장성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뒤 12월 31일 고종의 재가까지 얻어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1905년 6월 1일부터 일본의 화폐제도와 동일한 화폐제도가 한국에도 실시되었으며, 일본의 화폐가 공사의 모든 거래에 합

41) 『通商彙纂』 70, 1904.11.16. 경성 영사관 보고, 31쪽을 김재호, 위의 글, 133쪽에서 재인용.

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화폐정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은 제일은행에서 1905년 4월 17일 오사카[大阪]에 있는 일본 조폐국과 계약을 맺어 한국의 화폐를 일본 조폐국에서 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제국의 화폐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화폐자산을 축소 파산시키고, 급기야 화폐금융공황을 야기시켜 각계각층의 몰락을 부르는 제도적 폭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폭력성은 화폐정리사업의 추진방식에도 있었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신구화폐의 교환비가 책정에서 비롯되었다. 신구화폐의 교환비는 “구 은화 10兩은 신화금(新貨金)에 1원(圓)에 상당한 비액(費額)” 이라고 하여 2:1로 책정되었다.<sup>42)</sup> 그리고 당시 가장 유통량이 많았던 백동화에 대해서는 화폐정리가 실시되기 전인 1905년 6월 24일 탁지부령 제1호 「구화폐교환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전환국에서 발행한 것은 2:1로 환산하여 1매당 2전 5리, 기타 위조화는 1전, 형질이 조악한 것은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령에 의거해서 신구화폐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상, 백동화를 소지한 한국인의 화폐재산은 1/2 이하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sup>43)</sup> 한국인들은 자신이 소지한 백동화가 정화(正貨)인지 부정화(不正貨)인지의 사실 자체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상품이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에 투자하였다. 한국인들이 앞 다투어 방대한 백동화를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매수하여 신 화폐와 교환하였다. 그리하여 신구화폐 교환 청구자 가운데는 일본인이 6/10, 중국인이 3/10을 차지하고 한국인은 겨우

---

42) “[앞서] 신식장정에서 은본위제가 채택되었으나, 본위화가 발행되지 않고 보조화인 백동화만 남발되어 화폐시세가 1905년 무렵에는 이미 1/2의 수준으로 하락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메가타가 신구화폐의 교환비가를 2:1로 책정한 진짜 이유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화폐와 성질이 같은 신화폐를 구화폐와 교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새로 실시할 화폐제도의 본위화를 일본과 동일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신구화폐를 1:1로 책정한다면 신화로 교환해주는 측이 화폐시세가 하락한 만큼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메가타는 조선의 화폐제도를 일본의 화폐제도권으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본위화의 기초를 일본과 동일하게 해놓고 신화(일본화폐와 동일한 성질)와 구화를 화폐시세대로 교환해주는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업전에 대한 교환비가의 책정에서도 채택되었다.” (김재호, 위의 글, 148~149쪽)

43) 위조백동화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불리한 1/5로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폐기처분되어야 했다(김재호, 위의 글, 149쪽).

1/10만을 차지하였다. 백동화와 교환된 신 화폐가 일본인과 중국인의 수중으로 돌아가고, 한국인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상품만을 보유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필연적으로 화폐 금융공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당시에는 어음이 일종의 지폐처럼 유통되고 있었는데, 어음에 대한 현금 추심이 쇠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수중에는 이를 지불할 수 있는 화폐가 없었다. 현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현금에 대신하여 토지와 가옥을 처분해 줄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파산한 상인들은 경성 지역에서만도 수십 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 이후 거족적으로 전개된 의병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되었으며, 특히 금융공황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경성의 종로상인들은 ‘경성상업회의소’를 결성하고 탁지부에 대하여 상인구제자금으로 300만원을 대하(貸下)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당시 탁지부 대신은 이를 받아들여 대하를 약속하였으나 재정고문이 이를 승인해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종로상인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나아가 철시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금융공황의 참담한 상황을 연일 보도하고 경성상업회의소의 제안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힘을 보탰다.

그러나 당시 종로상인들은 당장의 금융공황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파산상태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어, 당시 일제가 추진하고 있던 화폐정책의 침략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메가타가 금융공황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금융기관을 설치하여 조선의 재생산구조를 일본 자본주의에 예속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때, 이에 대하여 하등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합류해 들어가고 말았다.

## 5.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표 1>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개항 ~ 대한제국기)

	주요 내용
『한국화폐사』 (1966)	<p><b>第四章 高宗末葉과 舊韓國時代의 貨幣</b></p> <p>第一節 高宗末葉</p> <p>海關稅納付用 어음, 押鑄當五錢, 近代貨 試鑄, 近代式押鑄貨 暫定發行, 仁川典圖局, 近代貨製造開始, 兌換署設置, 製造鑄貨의 發行保留, 新式貨幣發行章程 公布, 白銅化의 氾濫, 日本圓銀의 進出, 銀閣 日本圓銀通用</p> <p>第二節 舊韓國時代</p> <p>露韓銀行, 龍山典圖局, 貨幣條例 公布, 第一銀行券 發行, 第一銀行少額券, 私札通用, 舊貨幣整理, 舊貨幣還收狀況, 新貨幣 製造發行狀況, 舊韓國銀行 設立, 舊韓國銀行券 發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장 고종조에 이어 고종말엽과 구한국시대로 구성함</li> </ul> </li> <li>· 전체적으로 법령·조례 및 관련 기관의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사 서술을 보이며, ‘구화폐(舊貨幣)’와 ‘근대화(近代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전(舊錢)과 신전(新錢)을 대비함</li> <li>· 제1절 : 전환국의 설치와 변천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며, 특히 전환국 설치와 관련하여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화폐제도 개혁 건의를 주요 계기로 강조함. 이후 전환국의 운영에 일본인이 개입하게 되는 과정 또한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함.</li> <li>· 제2절 : 제1절에 이어 당시 화폐제도 개혁의 배경이 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언급하고 있음. 이전 시기에 청과 일본의 영향력이 주요하였다면, 제2절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새롭게 강조됨. 제일은행권의 발행을 비중 있게 다루되, 제일은행권 배척운동 등 각계각층의 반응 또한 언급하고 있음.</li> </ul>

	주요 내용
『증보 한국화폐사』 (1969)	<p><b>제4장 고종말엽과 구한국시대</b></p> <p>제1절 고종말엽 해관세납부용어음, 경성전환국 설치, 근대화폐의 압주(押鑄) 시도, 인천전환국 설치, 근대화폐주조개시, 태환서(兌換署) 설치, 주조화폐의 발행보류, 신식화폐 발행장정 공포, 일본원은(圓銀)의 유출, “銀” 자 각인(刻印) 일본원은 통용</p> <p>제2절 구한국시대 노한(露韓)은행, 용산 전환국 설치, 화폐조례공포, 백동화 남발의 폐해, 제일은행권 발행, 제일은행 소액권, 사찰(私札)통용, 구화폐 정리, 구 화폐 환수상황, 신화폐 제조 발행 상황, (구)한국은행설립, (구)한국은행권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화폐사』(1966)와 거의 동일, 용어 약간 변동</li> <li>• 제1절의 일부 항목 통합</li> <li>• 제1절 ‘백동화의 범람’ 항목이 제2절로 이동</li> </ul>
『한국의 화폐』 (1982)	<p><b>第4章 開港 및 大韓帝國時代</b></p> <p>第1節 開港과 貨幣制度의 紊亂</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開港當時의 貨幣</li> <li>2. 當五錢의 發行과 典圀局의 設立</li> <li>3. 銀本位制度의 試圖</li> </ol> <p>第2節 大韓帝國의 成立과 近代貨幣制度의 導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近代的 銀行의 設立</li> <li>2. 金本位制度 導入의 試圖</li> <li>3. 日本第一銀行券의 發行과 流通</li> </ol> <p>第3節 保護條約과 貨幣制度整理</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典圀局 廢止와 幣制整理</li> <li>2. 舊韓國銀行의 設立</li> <li>3. 舊韓國銀行券의 發行</li> </o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별 구성 유지, ‘고종말엽과 구한국시대’ 라는 용어 대신, ‘개항 및 대한제국시대’ 라는 용어를 사용함.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사건(개항, 대한제국 성립, 보호조약)을 기점으로 절을 구분하여 시대성이 좀 더 반영됨. 이전 2절 체제에서 3절 체제로 변화하면서 시기 구분도 세분화됨.</li> <li>· 서술 시기를 개항으로 구분함으로써 이전 『증보 한국화폐사』에서 조선후기 고종조에 실려 있던 당오전, 대동은전에 대한 서술 내용을 옮겨옴.</li> <li>· 제1절 :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의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조약이 조선의 화폐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서술함. 당시 화폐질서의 문란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조선 정부로 하여금 근대적 화폐금융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함.</li> <li>· 제2절 : 대한제국 성립 이후 국내에 등장한 조선, 러시아, 일본, 중국계 은행을 소개하고, 광무 5년의 화폐조례, 중앙은행조례와 태환금권조례를 차례로 열거함. 제일은행권에 대한 서술은 대동소이하나 제일은행권 구권과 신권을 비교한 서술이 추가됨.</li> <li>· 제3절 : ‘보호조약’ 과 ‘화폐제도정리’ 를 절의 제목으로 설정하였음에도 정작 본문에서는 양자가 갖는 침략성에 관한 서술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li> </ul>
『한국의 화폐』 (1994)	<p><b>第4章 開港 및 大韓帝國 時代</b></p> <p>第1節 開港과 貨幣制度의 混亂</p> <p>第2節 銀本位制度의 導入</p> <p>第3節 大韓帝國의 成立과 近代貨幣制度의 導入</p> <p>第4節 1905年의 貨幣改革과 金融恐慌</p> <p>第5節 舊 韓國銀行의 設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별 구성 유지, 3절 체제에서 5절 체제로 변화하였으며, 절 제목에서 ‘보호조약’ 을 삭제하고 ‘1905년의 화폐개혁과 금융공황’ 을 추가하여 제목에서 일제의 침략성을 찾기는 어려움.</li> <li>· 전에 비해 절 아래에 항과 목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역사 서술과는 형태를 달리하는 백과사전식 서술이 늘어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절 : ‘1. 개항 이후의 화폐’ 라는 항을 두고 ‘우리나라의 화폐’ 와 ‘외국화폐’ 를 구분하여 화폐의 종류를 열거함.</li> <li>· 제3절 : ‘1. 민족은행의 설립’ 이라는 항을 두어 은행의 종류를 열거함. 또한, 제일은행권에 대한 배척운동을 단독 항목으로 설정하여 이전에 비해 강조함.</li> <li>· 제4절 : 1905년의 화폐정리사업을 ‘화폐개혁’ 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으며, 그로 인한 금융공황을 새롭게 서술함.</li> </ul>

이상에서 살펴본 화폐사 연구 성과와 화폐사 서적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화폐』(2015) 제4장 <개항기 및 대한제국의 화폐> (43~71쪽) 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장의 구성을 보자.

#### 제1절 개항기의 화폐 유통

1. 외국의 은화 : 일본 은화, 중국 은화, 멕시코 은화, 러시아 은화
2. 조선의 화폐 : 상평통보, 대동은전, 당오전, 평양전

#### 제2절 화폐제도 개혁

1. 전환국 설립 및 운영 : 경성전환국, 인천전환국, 용산전환국
2. 금·은 본위제도 도입 : 은본위제도, 금본위제도
3. 근대적 은행 설립: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은행, 대한천일은행, 독립제일은행

#### 제3절 대한제국 시대의 일본화폐 발행 및 유통

1. 일본 각인은화 유통
2. 일본 제일은행권 발행과 배척운동:  
일본 제일은행권 발행, 일본 제일은행권 배척 운동

#### 제4절 화폐 정리 사업

1. 식민지 화폐제도의 형성
2. 구화폐 정리
3. 금융공황과 신화폐 유통 : 신화폐 유통

#### 제5절 구 한국은행의 설립

1. 구 한국은행 설립 경과
2. 구 한국은행권 발행

1. 『우리나라의 화폐』는 여타 장·절의 서술과 마찬가지로 화폐의 종류(예: 제1절의 제1, 2항)나 은행의 종류(예: 제2절의 제3항)를 열거하고, 그것을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설명하는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화폐』는 이전까지 화폐사 서적과 달리 전환국의 변천 과정, 금·은 본위제도의 도입 과정 또한 독자적인 항목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특정 시기의 화폐, 은행, 기관, 제도들을 백과사전식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며, 특히 이 시기처럼 다양한 화폐가 동시에 유통되던 복잡한 현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는 현 서술 방식이 당시의 복잡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전 간행 화폐사 서적들이 — 개항, 대한제국의 성립, ‘보호조약’ 등 강조하는 지점에 차이는 있지만 — 장·절의 제목을 통해서라도 화폐사 서술에 일정 부분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면, 『우리나라의 화폐』의 경우, 제목에서 시대의 특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시대적 맥락이 제거된 사실(화폐, 은행, 기관, 제도 등)의 나열은 역사 서술로서 의미를 갖기 어렵다. 예컨대, 같은 은화라도 고려시기와 16세기 그리고 개항기에 은화가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는 각기 다르다. 화폐사 서술에서 시대적 맥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역사 서술의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다른 사건을 배태하는지 그 계기를 밝힌다는 것이다. 계기성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화폐』의 서술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제4절 제1항의 ‘식민지 화폐제도의 형성’은 1905년 이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항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예컨대, 자금 대부분을 빌미로 전환국의 운영에 일본인이 참여하도록 한 것, 일본의 제일은행과 상인들이 조선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조선 화폐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것 등 모두 식민지 화폐제도의 전사(前史)로서 의미를 가지므로 화폐사 서술에서도 적절한 위상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3. 현재의 구성 방식은 당시 사용되었던 여러 화폐의 비중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제1절 개항기의 화폐유통에서 ‘외국의 은화’로서 일본 은화, 중국 은화, 멕시코 은화, 러시아 은화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 ‘조선의 화폐’로서 상평통보, 대동은전, 당오전, 평양전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4. 아울러, ‘외국의 화폐’에 대한 소개가 ‘조선의 화폐’에 앞서있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상평통보와 당오전, 대동은전, 평양전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외국화폐가 유입된 후 그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개항기 화폐경제의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해서는 새로운 화폐의 도입을 소개하기에 앞서 당시 시중에 통용되고 있던 화폐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글의 흐름 및 시간적 흐름에도 자연스럽다. 또한 본 단행본이 “우리나라”의 화폐사에 대한 정리와 소개가 목적임을 상기한다면, 당시 조선에 통용되던 화폐를 먼저 언급한 후 외국화폐의 유입과 그 영향을 언급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는 구성 방식이 될 것이다.

5. 내용 면에서 본다면, 조선의 ‘문란한’ ‘구식/전근대적 화폐제도’ 대(對) 일본의 ‘신식/근대적 화폐제도’의 구도가 반복, 고착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하기 전 조선의 화폐제도나 당시 화폐유통 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정작 서술된 바가 없으며 조선의 화폐제도가 ‘문란해진’ 원인에 대한 고찰도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 정부가 당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조 이익이 높은 백동화를 남발하였다는 서술을 한다면, 당시 왜 그토록 재정이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고찰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 없이는 ‘정체된’ 조선사회에 일본이 ‘신식/근대’ 문물을 전해주었다는, 이른바 식민사관의 서술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서술이 된다.

6. ‘신식/근대적 화폐제도’ 또한 일본(인)에 의해서 최초로 건의, 도입된 것이 아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880년대 개화파 지식인들 또한 비슷한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그 이전 실학자들의 화폐 유통론에 대해서도 원유한 교수 등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당 연구 성과들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7. 『우리나라의 화폐』에서는 조선의 경제적 혼란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항을 하고 ‘뒤늦게 외국의 근대적 화폐가 유입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서술의 논조가 근대적인 외국의 화폐제도의 유입을 강조하고 있으나, 외국 화폐의 유입이 조선의 경제와 화폐 제도 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없이 백과사전식 소개에 그치고 있다. 근대적 화폐제도로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거나, 경제적 침탈에 따라 식민지화가 가속되었다는 등 명암의 측면이 모두 언급될 필요가 있다. 외국화폐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화의 유통량이 컸음을 감안하였을 때 일본의 조선 경제에 대한 침탈을 이 부분에서 언급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이나 계기를 반영하는 서술은 현재의 백과사전식, 나열식 구성에서는 한계가 있다.

## 6. 전망과 제언

1. 우리나라의 개항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시작되었으며, 대체로 그 이후를 ‘개항기’라고 부른다. 그러나 개항기의 화폐경제를 보다 계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항 전후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폐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개항 전후 사회경제적 상황을 짧게나마 서술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화폐의 도입이 당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서술도 요구된다.

2. 화폐사 서술에서 시대적 맥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정치,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관계를 파악한 위에,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을 기점으로 화폐사상에 나타난 변화를 추적한다면, 정치사와 사회경제사를 아우른 더욱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고종 32년(1895)의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사건)과 을미개혁의 단발령을 당시 화폐개혁과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다.

3. 이 시기 화폐사상에서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당시 화폐사를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도 연결하여 보아야 한다. 일본은 물론 청나라와 러시아 등 외세가 한반도에서 세력을 잡을 때마다 그에 따라 화폐제도나 화폐유통의 사정도 변동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이 추천한 독일인 뮐렌도르프는 화폐주조와 관련하여 매우 강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로 인해 화폐제도가 상당 부분 변화하였다.

4. ‘구식/전근대적’ 화폐제도를 고수하고 있었던 ‘정체된’ 조선사회에 일본이 ‘신식/근대’ 문물을 전해주었다는 식의 서술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이 침략해 들어오기 전 조선 내에서 제기된 화폐 유통론, 은행 설립론을 검토하고, 그러한 건의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주장을 제기한 실학자, 개화파 지식인들의 개인적, 학문적, 정치적 배경과 계통을 확인하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현재 서술된, 개화파 지식인 및 일본인의 화폐개혁 요구와 함께 ‘화권재상(貨權在上)’의 전통적 화폐인식을 갖고 있던 조선 정부가 급변하는 시세를 맞아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는지를 반영한다면 좀 더 균형 있는 서술이 될 것이다. 개화파 지식인들이 영향 받았던 일본의 화폐제도와 함께 조선 정부가 참고하였던 청의 화폐제도 등도 아울러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6.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화폐』는 물론 기성 역사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근대’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근대’란 곧 ‘서구’를 가리키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서구를 재빨리 본받아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일본’이 되기도 한다. ‘근대’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 아래, 각 국가가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어떤 목표, 이상향으로도 여겨져 왔다. 실제 광복 직후 역사학계에서는 식민사관의 ‘정체성론(停滯性論)’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후기의 ‘근대적’ 모습을 추출, 강조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시대 상황에 걸맞은 연구 경향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근대’라는 개념에 대한 재고와 성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우리 역사를 연구하면서 내적 계기와 발전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발전의 목표가 반드시 ‘서구’, ‘일본’으로 대변되는 ‘근대’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 ‘일본’의 ‘근대적’ 화폐제도를 당연시하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화폐사 서술의 모색도 기대할 수 있다.

### Ⅲ. 일제강점기

#### 1. 식민지 통화제도의 형성과 그 성격

##### 1) 조선은행의 위상과 조선은행권 발행 제도

1909년 통감부는 재정과 금융에 대한 지배를 강화할 목적에서 제일은행 한국지점의 화폐 발행권을 유상으로 몰수한 다음, 한국은행 조례를 제정하여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을 설립하였다. 한국은행은 은행권 발행, 국고금 관리, 금 매입 등 중앙은행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시중 일반 은행과 같은 예금 및 대출 업무도 수행하였다. 한국은행은 제일은행 한국지점의 임원과 행원을 그대로 인수하였는데, 결국 한국은행의 설립은 제일은행 한국지점이 식민지 중앙은행으로 개편된 것에 해당하였다.<sup>1)</sup>

1911년 3월 조선은행법의 제정으로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으로 바뀌었다. 조선은행에 대한 화폐 발행권은 법제상 조선총독에게 귀속되었지만 다만 조선 외 활동에 대한 몇몇 중요사항은 대장성(大藏省)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총독부 하부기관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sup>2)</sup> 다만 보증 발행 한도는 한국은행 설립 당초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데에 이어 조선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3천만 원으로 인상되어 식민지 지배의 기초 형성에 있어 총독부가 조선은행의 발권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은행이 조선은행권을 발행하는 데에 근거 규정이 되는 조선은행법 제5장 제1·17·21·22·23·25조는 다음과 같다.<sup>3)</sup>

[법률 제48호] 조선은행법

(1911년 3월 28일)

1) 배영목, 『한국금융사 1876-1959』, 개신, 2002, pp.51-53.

2) 배영목, 「일제하 식민지 화폐제도의 형성과 전개」, 『경제사학』11, 1987, p.131.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사 기초자료집 「일제하의 금융」

## 제5장 은행권

제1조 조선은행은 주식회사로 하고 본점을 조선의 경성에 둔다.

제17조 1항 조선은행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① 환 어음 기타 상업 어음의 할인 ② 평상 거래하는 제 회사·은행 또는 상인의 어음금의 취급 ③ 환 및 하환 ④ 확실한 담보가 있는 대부 ⑤ 제 예금 및 당좌대월계정 ⑥ 금·은화, 귀금속 및 제 증권<sup>1)</sup>의 보호예치 ⑦ 지금은의 매매 및 화폐의 교환

제17조 2항 전항 외에 영업의 사정에 의하여 국채 증권·지방채 증권 기타 조선총독이 지정한 확실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제21조 조선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은행권의 양식 및 종류에 관해서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전항의 은행권은 조선은행의 본점 및 지점에서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금화(金貨) 또는 일본은행태환권(日本銀行兌換券)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지점에서는 본점에서 준비금이 도달하는 시간에 교환을 연기할 수 있다.<sup>1)</sup>

제22조 조선은행은 은행권 발행고(發行高)에 대해 동액(同額)의 금화, 지금은(地金銀) 또는 일본은행태환권을 비축하고 지불준비에 충당하도록 한다. 단 은지금은 지불준비 총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항의 지불준비에 의한 것 외에 조선은행은 특히 **3천만 원을 한도로**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

---

1) (개정) 대정(大正) 13년 7월 22일 법률 제21호 조선총독을 대장대신으로 개정한다. (개정) 소화(昭和) 17년 2월 24일 법률 제67호 제2항 중 금화 또는 일본은행태환권을 일본은행권으로 개정한다.



수형을 보증으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전2항에 규정한 것 외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은행권의 발행을 필요로 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국채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수형을 보증으로 그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부가 명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고에 대해 1년 100분의 5 이하의 비율로서 발행세를 납부해야 한다.<sup>2)</sup>

제23조 조선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은 조선총독의 관할 지역 내에서 무제한으로 통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은행권의 제조 발행, 손권(損券) 교환 및 소각 등의 수속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sup>3)</sup>

곧 조선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지불준비금을 확보하여야 했으며 그 준비금은 금화, 지금은, 일본은행 태환권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를 가리켜 ‘정화준비발행(正貨準備發行)’ 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이외에 일정 한도(3천만 원에서 법 개정에 따라 점차 한도가 확장됨)에서 보증 준비 발행이 가능하였는데, 보증 준비의 소재는 국채 및 확실한 증권이나 상업 어음이였다. 제한 외 발행도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일본 정부 대장대신(大藏大臣)의 인가를 얻어 소정의 발행세를 부담한 가운데 가능하였다.

---

2) (개정) 대정 7년 4월 1일 법률 제28호 제2항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개정한다. (개정) 대정 13년 7월 22일 법률 제21호 조선총독을 大藏大臣으로 개정한다. (개정) 소화 10년 3월 23일 법률 제1호제3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개정한다. (개정) 소화 12년 8월 11일 법률 제63호 제2항 중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개정한다. (개정) 소화 14년 4월 1일 법률 제59호 제2항 중의 1억 원을 당분간 1억 6천만 원으로 한다. (개정) 소화 17년 2월 24일 법률 제67조 제1항 중 일본은행 태환권을 일본은행권으로 개정한다.

3) (개정) 대정 13년 7월 22일 법률 제21호 조선총독을 대장대신으로 개정한다.

4) 애초에 정화 준비에 일본은행권이 있었던 것은 대만은행과 다른 조선은행의 특징이기도 한데, 대만은행의 경우에는 1937년 이후에야 정화 준비에 일본은행권이 추가되었다. (조명근, 「조선은행권 발행 제도에 있어서 보증준비의 함의 - 국채와 영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61, 2013, pp.374-376.)

이를 정리하면, 조선은행권 발행제도는 결국 비례준비제가 가미된 신축 제한 제도로서 정화 준비 + 보증 준비 + 제한 외 발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신축 제한이란 은행권 발행 준비에서 정화 준비와 보증 준비 이외에 제한 외 발행을 허용하여 은행권 발행에 탄력성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며, 비례 준비제란 은행권 발행 총량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정화를 준비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정화 준비에 있어서 금화, 지금은은 미미하였고 대부분은 일본은행권이였다. 보증 준비는 그 발행 한도액이 조선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었다. 제한 외 발행은 정화·보증 준비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인가권자(1924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조선총독, 이후에는 대장대신)의 허락을 받아 발행세를 납부하고서 통화를 추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발권 제도는 ‘일본은행권 태환권의 지불 준비’ 규정만을 제외한다면 일본은행의 발권제도와 유사하다. 곧 일본은행과 다르게 조선은행권 발권제도가 갖는 식민지적 성격의 핵심은 정화 준비를 쏠이 아닌 일본은행권으로 한다는 점에 있었다. 식민지 조선은 예외적인 몇 개년을 제외하고는 늘 국제수지가 적자였으므로 무역 과정에서 정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무역 수지 이외의 방법으로 일본은행권을 획득하지 않으면 은행권 발행에 커다란 제약이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증 준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여의치 않았다. 보증 준비 한도를 확장하여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지역 내외의 구매력 증가로 이어져 수입 초과를 야기하고 무역 역조를 심화시킬 것이었기 때문이다. 곧 조선의 통화제도는 그 식민지적 성격 등으로 인해서, 은행권 발행을 제약하는 요소가 상존하였고 이는 개발을 위한 자금의 공급에도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sup>5)</sup>

결국 조선은행은 대개 정화 준비와 제한 외 발행을 통해 발권을 조절하였다. 조선은행은 동 은행 도쿄 지점을 통해서 엔 자금을 콜머니에 의

5) 예컨대, 조선은행이 일본보다 높은 금리를 인한다면, 대출 및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 결과 수입이 증가하면서 정화인 일본은행권이 유출되어 조선은행은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조명근, 위의 논문, 2013, pp.374-376.)

해서 조달하여 정화 준비율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콜머니 이자율과 제한 외 발행에 따른 발행세를 비교하여 발행세가 더 불리한 조건일 경우에 선호되었다. 조선은행은 일본에서는 일반은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화 준비율을 충족시킨 다음 남은 엔 자금을 무이자로 묶어둘 바에야 적절히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을 이용한 정화 준비 방식의 발권도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은행은 조선에서는 중앙은행이었지만 일본 제국의 판도 속에서는 일반 은행의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은행권의 발권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였다. 정화 준비와 제한 외 발행은 콜머니 이자율 및 발행세의 유불리에 따라 선호가 바뀔 수 있었다. 한편, 보증 준비는 그 한도가 조선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제국의회 동의(법률 개정)를 거쳐야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목적이나 일본 정부의 의도, 특히나 일본이 침략전쟁을 확대함에 있어서 조선을 교두보로 삼는 상황 속에서 그 한도가 점차 증가해가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한 증가 추세는 앞선 조선은행법의 개정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조선은행법의 연이은 개정과 한도 증가 추세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발권 준비 사정 및 발행고 추이와 같은 경제·통화제도의 운용 자체와는 그리 상관없이 일제의 국책 수행에 순응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고 평가된다. 곧 조선 내 경제 사정보다 제국 전체의 이해관계 및 침략 전쟁 수행에 따라 결정되었던 법 개정이었다.<sup>6)</sup>

---

6) 조선은행의 입장에서 손쉽게 영리(營利)할 수 있는 보증 준비는 일본 제국 의회를 통해서 그 한도를 증액할 수 있었던 사정은 곧 조선은행권의 보증 준비 발행이 일본의 국책 사업에 잘 순응해야만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은행에게 국책 사업은 단순한 협조사항이나 부여된 업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였던 것이다. (조명근, 위의 논문, 2013 참조)

연도	개정 내용	개정 이유
1918 (대정7)	보증 준비 한도액 인상 (3천만 원 → 5천만 원)	만주 진출 (조선 외 영업)
1924 (대정13)	조선은행권 발행 감독권 주체를 조선총독에서 대장대신으로	만주 진출 이후 경영 부실 문제
1937·1939 (소화12·14)	보증 준비 한도액 인상 (5천만 원 → 1억 원 → 1억 6천만 원)	중일전쟁

## 2) 조선은행 및 조선은행권의 식민지적 성격

이상의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조선은행의 설립 취지와 그 활동은 식민지 지배 및 전쟁 확대라는 일제의 목적에 충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은행권의 금 태환은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었지만 실제적 효력은 없었다. 조선은행이 보유한 지금은의 양은 많지 않았고 준비금의 7할 이상은 일본은행권과 국채로 채워졌다. 조선은행권은 사실상 일본은행권의 태환권으로서 일본은행권과 고정환율로 묶인 일종의 신용화폐에 다름 아니었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본국 통화를 그대로 식민지에 유통시키기보다 식민지 통화를 발행하되 본국 통화와 고정환율로 묶어서 언제든지 취득, 교환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일례로, 전쟁이 확대되었던 1930년대 이후에도 일본과 조선의 통화를 끝내 구별 지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은행권이 내지 경제권의 옹호를 위하여 하나의 완충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일전쟁 기간에 조선은행권은 일본의 전비 지출로 인해 발생한 중국의 인플레이가 일본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어하는 1차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일본은행권 준비제도는 1931년 일본에서 금 본위 화폐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하였다. 곧 일본은행권이 금 태환성을 상실

하였음에도 조선은행권은 일본은행권과의 태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 본위제의 준비제도와 유사한 제약이 제거되지 않았던 것이다.<sup>7)</sup> 반면에 조선으로 일본은행권이 유입됨에 따라 조선은행권이 증발되는 경로는 차단되지 않았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이미 불환지폐가 된 일본은행권을 대량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선은행권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중일전쟁 시기 중국에서 행한 일본의 전비 지출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에 따라 조선에서 전시 인플레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당연한 결과였다.

둘째, 은행권 준비제도와 별도로 조선은행의 실질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선은행은 일제의 대외 침략 정책과 그 행보를 같이 하였다. 1910년대부터 조선은행의 조선 외 영업이 확대 추세에 있었고 1917년 11월 27일 조선은행권이 관동주(關東州) 및 만철 부속지(滿鐵 付屬地)의 법화(法貨)로 인정되어 조선은행권의 조선 외 유통이 확산되었다. 1917년 11월 29일에는 조선은행이 요코하마 정금(正金) 은행과 만주 내 금권(金券)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1918년 3월 14일에는 조선은행 보증 발행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만몽(滿蒙) 진출을 뒷받침하였다. 이후 조선은행은 만주사변 이후 만주 중앙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만주의 식민지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sup>8)</sup>

그런데 조선은행이 조선 외 영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1920년 초에 전쟁 이후 반동공황(反動恐慌)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만주 및 일본 지역에 살포한 대출의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막대한 불량 채권을 떠안게 되어 조선은행의 경영에 위기가 도래한다.<sup>9)</sup> 이에 조선은행 감독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조선은행 감독권을 대장대신에 귀속시키는 조선은행법 개정

7) 이영훈, 『한국경제사』Ⅱ, 일조각, 2017, pp.91-92.

8) 만주사변 이후 만주 중앙은행과 만주 흥업은행이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조선은행은 화폐 발행권과 주요 지점들을 양도하여 조선은행은 만주 내 식민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였다. 1935년 말부터는 유통 중이던 조선은행권 또한 회수되었다.

9) 조선은행의 일본-만주 대출과 그로 인한 불량 채권 문제 및 경영 위기에 대해서 총독부 내부나 조선인 언론계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동아일보에서는 “조선은행은 조선인 본위의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조선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서 만주를 상대로 한 조선은행의 방만한 경영을 비판하였다. (동아일보 1927년 2월 23일자 ; 조명근, 「1920-1930년대 조선은행의 금융활동에 대한 조선 내 여론 동향」, 『대동문화연구』75, 2011.)

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여 1924년 7월 22일에 공포되었다. 이로써 조선 은행은 일본 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직접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선 내부의 통화 운용 또한 조선 내 금융 정세보다는 일본의 판단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식민지 엔 블록 형성을 위한 목표에 더욱 충실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조선은행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데에는 과거 대한제국 정부가 발행하였던 주화 및 조선조 이래 유통된 엽전에 대한 통제가 동반되었다. 1918년 조선총독과 일본 대장대신은 일본 화폐법의 조선 내 확대 실시를 합의하고 소액 보조화폐에 불과한 엽전을 제외한 과거 대한제국 정부가 발행하였던 주화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그 결과 현금 통화에서 (조선)은행권 비율이 크게 높아져 이미 1910년대에 총 현금 통화량 중에서 은행권의 비중이 100%에 육박하였다.<sup>10)</sup> 이는 곧 전통적인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지폐(紙幣) 형태의 법정화폐가 현금 통화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상황을 보여준다.<sup>11)</sup> 다만 조선은행이 발행한 조선은행권이 조선 내 현

10) 배영목, 「통화량과 통화 구성의 장기 추이, 1905-2014」, 『경제사학』61, 2016, pp.205-206.

11)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포괄하여 생각하면 현대적인 의미의 법정화폐 혹은 신용화폐(fiat money)가 체계적으로 유통된 시기는 매우 짧다. 따라서 현대적인 화폐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정화폐(fiat money)와 실물화폐(Commodity money)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화폐(money)란 일반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 가치의 저장수단, 그리고 회계의 단위로 기능하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금과 은처럼 물적 상품가치에 의해 그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실물화폐(commodity money)와 정부의 법령과 신용에 의해 지지되는 법정화폐 내지는 신용화폐(fiat money)로 구분된다.

앞서 언급한 화폐의 기능을 충족하는 재화가 몇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이나 은, 동이다. 과거 한국에서 존재했던 은병이나 은화, 동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화폐는 그 형태나 크기가 일정하여 화폐의 단위로 기능할 수 있으며 또한 마모되지 않는 이상 그 가치가 미래에도 온전히 유지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여기서 은화나 동전은 그 가치가 함유된 은이나 동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물화폐라고 불린다.

현대 사회에서 실물화폐는 정부의 법령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가지게 된 법정화폐로 대체되었다. 과거 실물화폐가 그 자체의 성분으로써 특정한 가치를 가졌던 반면, 법정화폐는 대개 종이로 이루어진 지폐나 비귀금속류 주화의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해당 법정화폐가 그 자체의 재질이나 성분으로 함유하는 가치는 법령에 의해 가지게 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히 지폐의 경우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보관이나 운송이 과거 귀금속류 화폐에 비해 훨씬 쉽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자체가 본연의 가치를 내재하는 실물화폐와는 달리, 법정화폐는 그 가치가 ‘해당 화폐가 액면가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합의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 당국의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때에는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의 가치가 급락하기도 한다. 아울러 실물화폐는 일종의 재화라는 특성 때문에 공급이 쉽지 않다. 하지만 법정화폐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용이하게 막대한 양의 화폐를 제조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 화폐를 증가 발행함으로써 정부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외 채무를 지불할 수 있다는 장

금 통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조선 금융계에서 조선은행이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것은 아니었다. 산업금융의 목적으로 1918년 11개 도시의 농공은행을 통합하여 설립된 식산은행(殖産銀行)은 일반은행 업무를 겸하던 조선은행과 함께 금융계를 양분하였다.<sup>12)</sup>

---

점을 지닌다.

- 12) 식산은행, 금융조합, 일반은행 등 일제강점기에 결친 금융기관의 확충과 금융 공급의 확대는 전국적 범위에서 통합적인 금융시장을 성립시켰다. 우선 금융의 공급이 확대됨으로써 전근대의 長利를 비롯한 고이자 대출에 비하여 이자율이 대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확충과 각종 교통·통신 시설의 보급에 힘입어 지역 간에 서로 수렴하는 추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조선은행-일반은행 또는 식산은행의 독자적 산업금융 공급 등과 같은 금융 계열성의 구축에 따라 조선-일본에 걸쳐서도 같은 추세가 나타났다. (배영목, 『한국금융사 1876-1959』, 개신, 2002 ; 이영훈, 앞의 책, pp.94-97.)

## 2. 대공황 이후 엔 블록의 형성과 통화제도의 변화

1929년 10월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파급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를 해체시켰다. 영국은 국제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능력이 더 이상 없었으며 미국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각국 정부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본위제에서 이탈하여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였다. 또한 그런대로 통합되어 있었던 세계경제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을 기축으로 하는 몇 개의 통화 블록으로 분열하였다. 일본 경제는 1920년대 후반에 이미 심각한 금융 공황을 겪었기 때문에 대공황의 타격을 비교적 적게 입은 편이었지만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경제 불황을 면치 못하였다. 결국 일본 역시 금본위제에서 이탈하여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대공황의 여파에 따라 전체주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1931년 9월 일본의 군부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1932년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이어진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하여 1933년 국제연맹 탈퇴로 대응하였다. 이후 일본은 1945년 패전까지 침략전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엔 블록은 전쟁 수행을 위하여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졌다. 엔 블록이란 일본이 중심부를, 조선·대만·사할린의 식민지가 제1환을, 만주의 준식민지가 제2환을, 중국 관내의 점령구역이 제3환을, 나아가 1940년 이후 편입된 남방(동남아)의 점령지가 제4환을 이루는 동심환의 서열 구조를 이루었다. 각 환은 중심부 일본과의 거리, 산업 수준 및 연관성, 전쟁 수행 등에 필요한 부존자원의 조건에 따라 엔 블록 전체의 목표에 부합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sup>13)</sup>

이처럼 엔 블록 내부 각 환에 대한 역할 부여의 과정은 조선의 통화제도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 없었다. 1937년 7월 7일 노구교(蘆溝橋) 사건 직후인 1937년 7월 26일 일본 대장성은 일본 군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조선은행권을 화북에서의 군용 통화로 지정하였고 조선은행은 일본이 중국으

---

13) 이영훈, 위의 책, 2017, p.224.



로 군사비를 송금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은행권의 군용 통화 사용으로 일본 정부는 조선은행권 보증 준비 발행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이어 1억 6천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이러한 보증 한도의 확장과 함께 중국에서의 통화 증발이 지속되어 한도 외 발행액 또한 증가 추세였다.

이와 같은 통화 증발은 기존 굴신제한제(屈伸制限制)에 의한 은행권 발행 규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발행 한도의 상향 추세는 이미 앞서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1941년에는 결국 보증 준비와 정화 준비 사이의 구별을 철폐하고 대장대신이 정한 금액에 한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최고 발행액 제한제도’가 실시되어 관리 통화 체제가 성립되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조선은행과 대만은행도 최고 발행액 제한제도가 실시되어 ‘대장대신이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은행권 발행고에 대한 보증으로서 ... 일본은행에 대한 예금을 보유할 것을 요’ 하게 되었다. 새롭게 실시된 관리 통화제도 하에서 조선은행권의 최고 발행 한도는 1941년에 6억 3천만 원까지 인상되었다.<sup>14)</sup>

이처럼 대장대신의 허가만으로도 통화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정화 준비에 일본은행 예치금이 추가되면서 조선은행의 역외 결제 부담이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보증 준비 한도액 상향 또한 이러한 추세와 궤를 같이한 정책이었다. 정화 준비와 보증 준비 사이의 구분을 없애면서도 조선은행권의 정화 준비 제도를 존속시킨 것은 조선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의 등가교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조선은행권 자체의 가치가 폭락하고 이에 따라 일본과의 자금 결제망이 붕괴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곧 엔 블록에서 조선은행권의 역할을 정위(定位)시키는 작업이었다. 아울러 대장대신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최고 발행 한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 것은 전시 경제체제에서 통화 증발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였다.

---

14) 조명근, 「1941년 조선은행권 발행 제도 개정 연구-최고 발행 한도액 산정과 납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사총』83, 2014 참조.

결국 엔 블록의 동심환 구조에서 조선은행권은 일종의 중간단계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행권은 일본은행권과 1:1로 교환될 수 있었음에도 화폐를 통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조선은행권이 중국 괴뢰정부 및 만주국이 발행하는 통화의 준비금이 되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통화는 공급하되 물자는 전시 물류 통제를 통해서 가격 차이에 따른 자유로운 무역·유통을 봉쇄함으로써 인플레이가 제국 및 점령지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어하려고 하였다.<sup>15)</sup> 곧 인플레이에 대한 방과제 역할을 위해서 조선은행권과의 화폐 통합을 하지 않고 이러한 3중의 동심환 구조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

15) 김낙년, 『일제 하 한국경제』, 해남, 2003, pp.61-63.

### 3.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표 2>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일제강점기)

	주요 내용
『한국화폐사』 (1966)	제5장 일정하(日政下)의 화폐 제1절 조선은행의 발족 발행권 종류, 사불수형(仕拂手形) 발행, 발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은행의 설립과 조선은행법의 개정 이력</li> <li>· 발행은행권의 종류(액수별)</li> <li>· 발행액의 증가 추세 제시</li> <li>· 전시체제 성립에 따른 화폐제도의 변화</li> <li>· 조선은행권 발행제도의 식민지적 성격을 지적함.</li> <li>· 조선은행의 만주 진출(조선 외 영업), 전시금융체제 등에 대한 논의가 없음.</li> </ul>
『증보 한국화폐사』 (1969)	제5장 일정시대 제1절 조선은행의 발족 제2절 화폐 발행 상황 발행권종, 사불수형(仕拂手形) 발행, 발행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액의 증가 추세는 지적되었지만 전시체제 성립과의 관련성은 지적되지 않음.</li> <li>· 다만 조선은행권 발행제도의 식민지적 성격은 지적함.</li> </ul>
『한국의 화폐』 (1982)	제5장 조선은행 시대 제1절 조선은행의 설립과 조선은행권의 발행 조선은행의 발족, 조선은행권의 발행과 그 경과, 조선은행의 발행 준비와 발행액 추이, 조선은행 설립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화폐 유통 현황 제2절 전시 금융체제와 조선은행권의 증발 전시금융체제의 확립, 발권제도의 변경, 조선은행권의 현지 제조 계획, 조선은행권의 신규 발행과 해방 이전의 화폐 유통 현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은행의 발족, 기능, 영업점 설치</li> <li>• 조선은행권 인쇄·발행 방식 및 발행권의 인상(人像) 설명</li> <li>• 조선은행권의 만주 진출</li> <li>• 조선은행의 ‘소액 지금 어음’ 발행</li> <li>• 조선은행의 새로운 은행권 발행과 화폐 도안 변경</li> <li>• 발행 준비 제도 및 발행액의 변화</li> <li>• 전시체제 성립에 따른 전시금융체제의 성립, 화폐 제도의 변화 지적, 조선 외 발행액의 증가 추세</li> </ul>
『한국의 화폐』 (1994)	<p>제5장 일제의 국권 침탈 시대</p> <p>제1절 조선은행의 설립과 은행권 발행제도 조선은행의 발족, 조선은행권의 발행제도, 발행 화폐의 종류</p> <p>제2절 조선은행권의 발행과 유통 (1910~1936년) 조선은행권의 발행 추이, 조선은행의 경영과 화폐 유통, 새로운 은행권의 발행</p> <p>제3절 전시금융체제와 조선은행권의 증발 전시금융체제의 확립, 발행제도의 변경과 발행 준비, 전시금융과 조선은행권의 증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권의 종류 및 인쇄 방식 (대장성 인쇄국·총독부 직영 인쇄 공장)</li> <li>• 정화 준비·보증 준비의 비율과 발행 잔액, 권종별 발행 잔액의 시대별 변화 추이</li> <li>• 조선은행의 자금 조달 및 자금 운용의 방식별 변화 추이 콜머니에 의한 엔 자금 확보, 만주사변 이후의 경기 회복에 따른 조선은행의 총 자산 증가 추세</li> <li>• 총 통화량 대비 조선은행권의 비율 변화 추이</li> <li>• 전시체제 성립에 따라 신축 제한 준비제도에서 최고발행액 제한제도로의 변화하였음을 지적함.</li> <li>• 이상의 사항 등을 통계표를 통해서 제시함.</li> </ul>

이상에서 살펴본 일제강점기 화폐사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화폐』(2015) 제5장 <일제강점기의 화폐>(74~96쪽)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서술의 주체 측면에서 일본 제국의 판도 속에서 조선의 화폐 발행 정책 및 그 실태를 조선은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식민지적 성격 내지 침략전쟁에 부응하려는 목적성을 본격적으로 부각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었다. 예컨대, ‘신축제한발행제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 일본 자본은 아무런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조선은행은 조선은행권을 발행하기 위해 일본은행권을 보유해야 하므로 조선 자본이 일본으로 이동하는 것은 일본과의 국제수지에 의해 제한되었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사실관계의 측면에서는 틀림이 없지만 ‘화폐사(貨幣史)’, 곧 역사적 분석으로서는 부족함이 많다. 따라서 조선은행권 발행에 있어서 일본은행권을 준비금으로 하는 제도야말로 식민지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 또한 보증 준비 발행 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해간 사정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침략전쟁 확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연구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들이 보충되어야 역사적 분석으로서의 화폐사가 온전하게 서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4. 전망과 제언

1. 엔 블록 형성에 대해서 선후관계 및 비교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대공황 이후 다른 통화 블록의 형성과의 비교사적 검토를 통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화폐·금융제도와 일본-조선의 관계·위상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화폐사의 관점에서는 일본은행-조선은행의 관계 설정과 조선은행의 만주 진출이 동심환적으로 구성된 엔 블록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선후·인과관계의 측

면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2. 근현대 화폐사를 논함에 있어서, 실제 화폐 이용 실태 및 이용 문화의 형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은 그 시대적 배경이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지적한다. 여기서 봉평·대화의 장시(場市)를 오가는 장돌뱅이들이 “돈을 산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일찍이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유통 과정에서 ‘돈’(금속화폐)을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 내지 도구로 인지하였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 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 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벌여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대중들이 화폐를 어떻게 인지하였는지, 근대화의 성과에 차이가 있는 도농(都農)에 걸쳐서 혹은 일상거래나 선물(贈物)·부조(扶助)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화폐를 사용하고 인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나 혼례 및 상장례에 부조에 대한 기록은 가문마다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며 해방 이후까지도 지역의 물가나 가정의 일상 거래에 대한 일기를 남긴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화폐 이용에 있어서 가장 세밀한 차원에서 연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는 곧 화폐의 실질적 이용을 이용자들의 층위에서 검토하는 것이며 거시적인 화폐 정책 및 경제 변동과 짝하여 한국 화폐사의 중요한 일단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3. 화폐 정책, 물가 등에 대해서 해방 전후에 걸쳐 인과관계 속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일본군 군표, 해방 직전 남발된 100원권 문지 등이 해방을 전후한 화폐 유통 실태에 대한 주요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해방을 전후하여 총독부의 화폐 정책이 미군정(美軍政) 나아가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의 화폐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민간의 화폐 유통 실태가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근현대 화폐사의 변동을 선후관계·인과관계 속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화폐사에서 있어서 식민지적 성격의 탈각(脫却)과 근대 화폐 정책의 유산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V. 광복 이후의 시기

광복 이후 시기의 한국 화폐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의 기록이 완벽히 남아 있으며 관련 제도나 정책의 수립 경과와 의도 따위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그 결과, 광복 이후 시기에 대한 화폐사 서술은 대체로 화폐 권종의 변화나 발행 양상 혹은 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 1. 광복 이후 ~ 한국은행 설립 이전의 화폐와 화폐제도

#### 1) 화폐 제도

광복 직후 한국에서는 ‘군정법령’ 제 21호에 의해 ‘법률의 존속’이 이루어지며 조선은행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광복을 전후로 한 시기의 화폐 제도는 현대의 제도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보수적인 관리통화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41년 이전까지의 통화제도는, 은행권 발행량과 같은 크기의 태환준비를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전액준비제도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발행량에 비례하는 태환준비를 요하는 굴신제한제도(屈伸制限制度, elastic limit system)였다. 이후 보다 유연한 최고발행액 제한제도가 도입되지만, 두 제도 모두 통화당국의 은행권 발행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현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굴신제한 제도 하에서 화폐의 발행은 통화당국이 보유한 정화 준비(正貨準備)와 보증 준비(保證準備)의 일정 비율로 통상 제약되기는 하지만 특정한 경우 그 제한을 벗어난 발행이 인정되었다. 한편 최고발행액제한제도에서는 정화 준비와 보증 준비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으며, 추가적인 발행을 할 때 3푼 이상의 발행세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광복 이후 후술할 각종 사유로 인해 통화 발행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화폐제도

---

1) 본 장의 역사적 사실은 윤석범·홍성찬·우대형·김동욱 저 『한국근대금융사연구』와 한국은행 저 『우리나라의 화폐』를 주로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한도를 초과하는 발행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최고발행액의 한도를 증대하는 등의 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 2) 화폐 발행 상황

광복 직후 한국에서는 조선은행권,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 일본군 군표를 포함한 총 4가지의 화폐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1945년 9월 7일 통화에 대한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제 3호에 따라 일본군 군표가 무효화되고, 이후 ‘군정법령’ 제 57호에 의해 일본은행권과 대만은행권의 유통이 정지된다. 한편 미군의 ‘A’자가 찍힌 보조군표가 일본군 군표의 무효화와 동시에 38도선 이남 지역의 법화로 지정되었는데, 1946년 7월 1일 총사령부 포고 제 4호 및 군정법령 제 95호에 의해 이 보조군표의 법화지정이 다시 취소되면서 조선은행권이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화폐로 남게 되었다.<sup>2)</sup>

광복 직후 국내 화폐의 유통 상황

화폐명	1945.8.15	9.7	11.2	1946.2.21	7.1	1953.2.17
일본군 군표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						
미군 ‘A’자가 찍힌 보조군표						
조선은행권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화폐』, 2015.

조선은행권은 이렇듯 1946년 7월 1일부터 이후 한국은행권이 법정통화로 정해지기 전까지 한국의 유일한 통화로 남았으나 혼란스러운 정국 하에서 다소간의 진통을 겪는다. 해방 이후 일본인 예금 인출의 급격한 증

2)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화폐』, 2015.

가 때문에 조선은행권 1,000원권의 발행이 건의되었으나 통화 증발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의 을 100원권 원판을 탈취하여 불법적으로 조선은행권을 찍어냈으며, 이 인쇄원판은 이후 근택인쇄소 평판과장으로 일하던 김창선(金昌善)에게 다시 탈취당해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수많은 위폐들이 범람하여 100원권의 경우 은행에서조차 수납하지 않는 사태에까지 이른다.<sup>3)</sup>

광복 이후 정부 수립 이전까지 을·병·정·무 100원권과 을 1원권, 을·병·정 10원권이 발행되었으며,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은행 설립 전까지 신 10원권과 5원권을 포함하여 소액권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50전권, 10전권, 5전권이 발행되었다. 이 때 전권의 가치는 원권의 100분의 1이었다.

광복 이후부터 5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화폐 및 금융제도는 당시 경제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는데, 이 시기 정부는 대체적으로 통화 공급에 있어 보수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통화제도의 측면뿐만 아니라 1946년 10월 5일과 1949년 7월 1일에 실시된 대출금리 인상 정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광복 직후 일본인들의 예금인출과 일본 정부의 청산자금 지급을 위한 조선은행권 발행 잔액 증가, 연합군 주둔군비 지출 등 미군정 하의 각종 지출 및 정부 수립 이후 국고금의 지출 증가에 따라 화폐 발행 잔액은 1945년 8월 14일 48억원에서 1950년 5월 말에는 6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단기간에 1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sup>4)</sup>

---

3) 윤석범·홍성찬·우대형·김동욱, 『한국근대금융사연구』, 세경사, 1996.

4) 윤석범·홍성찬·우대형·김동욱, 『한국근대금융사연구』, 세경사, 1996.

## 2. 한국은행 설립 이후의 화폐와 화폐제도

### 1) 화폐 제도

1950년대의 경제정책은 1940년대와 마찬가지로 광복과 전란을 거치며 혼란스러워진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1950년대 초에 제정된 ‘경제안정 15원칙’ 과 1957년의 ‘재정안정계획’ 에서 잘 드러나는데, 전자는 당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며 후자는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1950년 5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권이 불환지폐의 지위를 얻음과 동시에 기존의 최고 발행액 제한이 해제되면서 현금통화 및 통화량의 증가가 기존에 비해 현저히 간단해졌다. 정화와의 교환 권리가 존재하는 태환지폐를 전제하는 통화제도는, 보유한 금이나 은 따위에 의해 화폐 발행 총액이 결정되는 본위제와 유사한 논리로 총 발행액 규모에 있어 모종의 한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1950년 5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은행법 제 47조에서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라고 규정한 것 외에는 정화나 보증 준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은 기존과는 달리 은행권 발행액의 한도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지 않는 관리통화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화폐교환 조치가 각각 1948년<sup>5)</sup>과 1950년에 이루어졌다. 1948년 초에는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1947년 12월 이루어진 통화개혁으로 인해 구 조선은행 100원권의 가치가 무효화됨에 따라 이 구 조선은행 100원권이 남측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하여 1차 교환 조치가 수행되었다. 교환 금액의 규모는 1948년 기준 총 발행 통화 잔액의 1/4에 해당할 정도로 거대했다. 1950년에는 전시 북한군이 남한 점령 지역에서 발행한 적성통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유통되던 조선은행권을 전면적으로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교환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은 1948년의 교환조치와는 달리 1950년 교환조치는 일정한

---

5) 이는 시기적으로 한국은행 설립 이전이기는 하나 서술의 일관성을 위해 본 절에 삽입하였다.

지불제한이 존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0억원 가량이 회수되지 않았다.

전후 한국에서는 1953년과 1962년에 걸쳐 2차례의 통화조치가 이루어진다. 1953년의 1차 통화조치는 전시 인플레이션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기존 원(圓)화를 환(圓)화로 100:1의 비율을 적용하여 교환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은행에 동결하는 긴급금융조치가 동반되었다. 1962년 2차 통화조치에서는 환화가 다시 원화로 10:1의 비율을 적용하여 교환되었는데 이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다.

## 2) 화폐 발행 상황

한국은행 설립 이후 대한민국의 화폐는 두 차례 그 단위가 변경되었으며, 그 때마다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통화 단위를 축소하기 위한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 수반되었다. 아울러 지폐 이외에도 주화가 1959년 10월 20일 50환화와 10환화를 필두로 하여 제조되기 시작하였다. 각종 지폐와 주화, 기념 주화의 제조 시기, 발행 상황, 규격 등의 정보가 한국은행 저 『우리나라의 화폐』 2015년 판의 본문과 도감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기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3. 『우리나라의 화폐』 서술 검토

<표 3> 한국은행 역대 화폐사 서술 검토 (광복 이후)

	주요 내용
『한국화폐사』 (1966)	<p>解放以後의 貨幣 美軍政下 發行事情, 發行券 種類 獨立以後<sup>6)</sup> 韓國銀行의 設立, 發券制度, 第一次 通貨措置, 第二次 通貨措置(圓貨發行), 第三次 通貨措置(圓貨發行), 現用貨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광복 이후 한국의 화폐 제도와 화폐 종의 변천을 장황하게 서술함.</li> <li>· 제 1~3차 화폐조치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이 내용이 서술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함.</li> <li>· 미군정 하의 시기와 독립 이후의 시기로 시점을 구분하였음.</li> <li>· 광복 직후 일제 시기의 화폐와 화폐 제도가 잔존하였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미군정 하의 화폐제도와 당시 상황을 매우 짧게 서술함.</li> <li>· 독립 이후 시기의 내용에는 한국은행의 설립과 화폐제도의 수립, 그리고 이어서 이루어진 제 1~3차 화폐조치를 포함하였음.</li> </ul>
『증보 한국화폐사』 (1969)	<p>해방이후 제 1절 미군정시대 화폐발행사정, 발행권중 제 2절 한국은행 설립이후 한국은행의 설립, 발권제도, 제1차 통화조치, 제2차 통화조치(환화발행), 제3차 통화조치(원화발행), 현용화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1966년 판과 비교하였을 때, 제 2절을 기존 獨立以後에서 한국은행 설립 이후로 변경하여 기존 2절의 내용 중 일부가 1절에 포함된 점 이외에는 1966년 판과 매우 유사함.</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6년 판 제 2절 獨立以後에서 독립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하였는데, 본 판에서는 기준을 한국은행 설립으로 삼음으로써 시기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함.</li> <li>·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 설립 사이에 진행된 화폐제도의 정비 과정이 본 판에서의 시기 구분 변경으로 인해 2절 대신 1절에 포함됨.</li> <li>· 2절 마지막의 맺음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내용이 없음.</li> </ul>
『韓國의 貨幣』 (1982)	<p>第6章 韓國銀行 時代</p> <p>第1節 大韓民國 政府樹立과 韓國銀行 設立</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政府樹立 以前의 朝鮮銀行券 發行</li> <li>2. 政府樹立과 韓國銀行의 設立</li> <li>3. 韓國銀行 設立과 當時의 貨幣發行狀況과 銀行券의 特徵</li> </ol> <p>第2節 第1次 通貨措置와 韓國銀行의 圓券發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25動亂과 韓國銀行券의 最初發行</li> <li>2. 第1次 通貨措置</li> <li>3. 韓國銀行 圓券의 發行</li> <li>4. 貨幣의 發行狀況</li> </ol> <p>第3節 第2次 通貨措置와 韓國銀行의 圓券發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第2次 通貨措置</li> <li>2. 韓國銀行 圓券의 發行</li> <li>3. 新種 圓貨의 發行</li> </ol> <p>第4節 第3次 通貨措置와 韓國銀行의 圓券發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經濟開發計劃의 推進과 第3次 通貨措置</li> <li>2. 圓貨 銀行券 및 鑄貨發行</li> </ol> <p>第5節 新種 圓貨의 發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새로운 樣式의 銀行券 發行</li> <li>2. 高額 銀行券의 發行</li> <li>3. 鑄貨의 發行</li> </ol>

	주요 내용
	<p>4. 紀念鑄貨의 發行</p> <p>第6節 貨幣體系의 整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現用 貨幣體系</li> <li>2. 貨幣體系의 整備 概要</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서술 분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징적으로 화폐 발행 상황 등의 수치를 용이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수의 표를 추가함.</li> <li>· 장의 이름이 한국은행 시대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광복 이후 시기의 화폐 제도 및 화폐 권종의 변천을 다루고 있음.</li> <li>· 1966년과 1969년 판에서 장황하게 서술된 수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표를 다수 포함하였음.</li> <li>· 권종별 발행량이나 권종의 특징과 같은 세세한 내용이 추가됨.</li> <li>· 기존에 매우 축약적으로 다루어진 광복 이후와 한국은행 설립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에 약간의 내용을 덧붙임.</li> <li>· 1969년 이후 새로이 발행된 화폐와 각종 기념주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li> <li>· 그 외 전반적인 서술은 1969년 판과 궤를 같이함.</li> </ul>
『韓國의 貨幣』 (1994)	<p>第6章 解放以後 韓國銀行 設立 以前 時代</p> <p>第1節 政府樹立 以前의 貨幣發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貨幣 流通 및 貨幣狀況</li> <li>2. 銀行券의 特徵</li> </ol> <p>第2節 韓國銀行의 設立 以前의 貨幣發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政府樹立과 貨幣發行狀況</li> <li>2. 銀行券의 特徵</li> </ol> <p>第7章 韓國銀行 時代</p> <p>第1節 韓國銀行의 設立</p> <p>第2節 通貨措置와 韓國銀行券의 發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950年 貨幣交換과 ‘圓’ 貨 發行</li> <li>2. 1953年 通貨措置와 ‘圓’ 貨 發行</li> <li>3. 1962年 通貨措置와 ‘원’ 貨 發行</li> </ol> <p>第3節 1962年 通貨措置 以後의 貨幣發行</p>

	주요 내용
	1. 銀行券의 發行 2. 鑄貨의 發行 第4節 紀念鑄貨의 發行 1. 紀念鑄貨 發行現況 2. 紀念鑄貨 流通現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2년 이후 새로이 발행된 화폐와 각종 기념주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서술 분량과 내용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또한 광복 이후 한국은행 설립 이전 시기를 새로운 장으로 구분함.</li> <li>· 추가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69년, 82년 판에 적용된 시각, 관점, 서술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음.</li> </ul>

위 표의 내용으로부터 광복 이후에 대한 서술은, 새로이 발행된 지폐와 주화 그리고 기념주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매 판본마다 대폭 추가된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 글로만 다소 장황하게 쓰인 1966년·1969년 판본과는 달리 1982년 판부터는 화폐의 발행 상황 등과 관련된 표를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가독성을 현저히 높였으며, 새로 출간된 2015년 판에서는 실제 지폐의 이미지를 본문에 넣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광복 이후의 시기는 상대적으로 최근이며 공신력 있는 자료가 많이 존재하기에, 관련 제도나 정책의 수립 경과와 의도 따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당히 상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2015년 판에서는 1994년 이후 신규 발행된 주화나 지폐 및 기념주화에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대폭 분량이 증가되었다. 현재 다루어진 부분에 한해서는 본 2015년 판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완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화폐에 대한 정의가 미비하여 앞선 장의 화폐와 본 장의 화폐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

6) 시기 구분에 대해 명확히 서술된 바는 없으나, 내용으로 유추하여 볼 때 여기서의 독립 이후의 시기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으며, 이는 태환, 불환, 최고발행액제한제도, 굴신제한 제도 등 화폐제도에 대한 설명의 미비와 더불어 화폐제도의 변천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948년의 1차 화폐교환 조치는 전체 화폐발행액 중 1/4에 해당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화폐교환 조치에 비해 그 서술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전망과 제언

광복 이후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는 시기이며 심지어 관련 제도나 정책의 수립 목적까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학술연구가 존재하기 힘들다. 이에 광복 이후 시기에 대한 화폐사 서술은 대체로 화폐 권종의 변화나 발행 양상 혹은 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정리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화폐』 2015년 판은 그간의 화폐사 연구 실적을 집대성하여 대체로 광복 이후 시기에 대한 완결적인 서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의 신권 지폐 발행과 각종 기념 주화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과거 화폐의 규격이나 특징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하 언급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본 책은 화폐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정의하고 있지 않다. 화폐에 대한 정의와 그 본연적 기능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광복 이후 시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화폐에 대해서도 더욱 윤택한 서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한국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한국은행이 설립된 뒤 변화한 관리통화제도의 양상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풀어 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1950년 한국전쟁 도중에 있었던 화폐교환 조치에 대한 내용은 세세히 포함하고 있는 반면, 규모가 마찬가지로 상당하였던 1948년의 화폐교환 조치에 대한 서술은 비록 6장 2절에서 이와 관련된 법령 제182호가 언급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조선은행권이 전면적으로 한국은행권으로 대체된 1950년의 화폐교환 조치만큼은 아니지만 전체 화폐 발행잔액의 1/4에 달하는 규모의 교환이 1948년 교환조치에서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 보다 상세한 서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우리나라의 화폐』의 발행 목적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되어야겠지만, 금융 및 통화정책이나 외환정책에 대한 논의도 간략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 2015년 판에서는 대체로 어떤 시대에 어떤 화폐가 있었고 이 화폐가 발행된 경위와 목적은 어떠한 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특히 근대 이후의 시기에 들어서는 관련된 화폐제도나 정책이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지만 주로 화폐 발행 규모나 화폐의 규격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에 다음의 측면에서 간략하나마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 발행의 전권을 가지게 된 이후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자금을 조성하거나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화폐를 증발하거나 화폐 발행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금이나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시기에는, 금이나 은의 채굴을 정부에서 독점하지 않는 이상 화폐 발행을 정부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 또한 매장량이나 채굴 기술의 한계가 있어 일정 정도를 넘어선 증가 발행이 매우 어려웠기에 정책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지난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었던 비귀금속 화폐 상평통보의 경우에도, 제조를 위한 소재의 공급에 제한이 존재하여 증가 발행의 속도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속 화폐에 비해 제조가 간단한 지폐가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화폐 발행의 정책적 이용 가능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경제학에서 정부의 경기조절정책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통화정책

에 있어 현대적인 지폐의 등장은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서로 다른 경제체제의 화폐가 교환될 필요가 자연스럽게 대두하였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화폐를 다루고자 하는 본 책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환을 다루는 것은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화폐가 가진 가치가 어떤 자산에 연동되었는지<sup>7)</sup> 혹은 어떤 식으로 외국환과의 교환 비율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7) 예컨대 일제강점기의 조선은행권은 원칙적으로는 태환화폐인 일본은행권과의 1:1 교환이 가능하였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러한 교환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V. 결 어

고조선 이래 전개되어 온 한국의 전통 화폐사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개항기(국교 확대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화폐사에 대한 학계의 연구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그간 한국은행에서 간행하여 온 역대 『한국화폐사』의 내용을 점검하여 그 개선에 대한 전망과 제언을 하면 이상과 같다.

개항 이래 대한제국기까지 조선의 화폐경제는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조선후기 상평통보의 전국적 보급을 배경으로 화폐경제가 활성화되고, 환과 어음처럼 신용에 토대한 제도가 운용되는 등 발달상을 보이는 한편, 고액전 발행 등 국내의 경제 문제가 미처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항을 계기로 한 경제적 격변을 맞이하였다. 개항 이후 일본, 중국, 러시아, 멕시코 등 각국 화폐들이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특히 일본화폐의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이후 일본의 경제적 침투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다. 고종 15년(1878) 일본 제일은행 부산지점을 시작으로 여러 일본계 은행이 조선 각지에 설립되어, 일본 상인의 무역·상업 자금을 지원하였다.

일본계 은행들의 활동은 조선의 정부와 민간에 자극을 주기도 하였다. 특히, 어윤중, 박영효 등 일본을 다녀온 개화파 지식인은 화폐를 더욱 널리 유통시키는 한편 일본과 같이 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고종과 정부 또한 은행 설립을 급박한 시무로 인식하였으며, 상설 조폐기구인 전환국을 설치하여 신식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재정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다.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거치며 불완전하게나마 중앙 관제에 ‘은행국’이 등장하였으며, 대한제국 성립 이후부터는 정부 관료와 대상인들이 함께 설립한 민간 은행들이 늘어났다. 고종은 ‘화권재상’의 전통적인 인식 아래 민간 은행과 별도로 독자적인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침략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상인들은 상업상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조선의 화폐 제도를 저들 방식으로 ‘개혁’하고 일본 화폐를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방안을 요구하였다. 이러

한 요구에 따른 「신식화폐발행장정」의 반포를 계기로 일본 화폐의 국내 자유 유통이 허용됨으로써, 조선 화폐경제의 대일 종속성이 전에 비해 한층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고문으로 취임한 메가타 다네타로는 ‘재정정리’라는 명목으로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화폐자산을 축소 파산시켜 화폐금융공황을 야기하였으며 그 자체로도 대한제국의 화폐 자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였다.

이처럼 개항 이래 대한제국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화폐경제의 발달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 근현대 화폐사의 이러한 양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폐사·경제사는 물론 당시 화폐·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치, 외교, 군사적 사건들을 아울러 파악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식/전근대적’ 화폐제도를 고수하였던 조선 사회에 일본이 ‘신식/근대’ 문물을 전해주었다는 일제 식민사관의 도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의 침략 이전 조선의 화폐경제와 조선(대한제국) 정부의 화폐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이후 전개될 화폐사의 흐름을 보다 역사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진 일제강점기는 식민지 중앙은행으로서의 조선은행이 조선은행권을 발행하여 총 통화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일제의 식민통치에 따라 화폐 정책이 식민지적으로 재편되는 시대였다. 조선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정화 준비 발행, 보증 준비 발행, 제한 외 발행을 할 수 있었기에 조선은행의 은행권 발행 제도는 비례준비제가 가미된 신축 제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총 통화량 가운데 조선은행권의 비중은 거의 100%에 육박하였는데, 이는 식민지적 성격을 전제한 가운데 근대적 화폐 유통의 양상을 보였던 것이라 하겠다. 조선은행권의 식민지적 성격은 정화 준비를 금(金)이 아닌 일본은행권으로 한다는 점에 있었고 이는 이 점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통치 방식과의 공통적이었다. 조선은행의 실제 활동에서도 조선은행은 일제의 대외 침략 정책과 그 행보를 같이 하였는데, 조선은행의 만주 외 영업은 일제의 만주 침략에 선행하였던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한편, 1930년대에는 대공황의 여파로 일본에서는 전체주의 체제가 성립되고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화한 이후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엔블록이 전쟁 수행이라는 목표 하에 더욱 긴밀하게 견고하게 구성되었다. 엔블록은 일본이 중심부를, 조선·대만·사할린의 식민지가 제1환을, 만주의 준식민지가 제2환을, 중국 관내의 점령구역이 제3환을, 나아가 1940년 이후 편입된 남방(동남아)의 점령지가 제4환을 이루는 동심환의 서열구조로 편성되었다. 각 환은 엔블록 전체의 목표에 부합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는데, 조선은행권은 일종의 중간단계 역할을 수행하여 중국 괴뢰정부 및 만주국이 발행하는 통화의 준비금이 되었으며 동심환 구조 자체는 전시 인플레이가 제국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일제강점기는 화폐사상 근대적 화폐제도가 식민지적 성격 속에서 형성되는 시기다. 이에 화폐제도 및 정책의 식민지적 성격을 전체 식민지 정책의 거시적 구조에서 검토하는 한편,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비교사적 검토를 통해 그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한편, 근대적 화폐제도의 형성 과정에서 화폐 사용자들이 어떻게 화폐를 인식하고 사용하였으며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전통 속에서 근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화폐사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작업이라는 의의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해방 전후에 걸쳐 화폐 정책과 화폐 사용 문화 등에 대해서 계승과 단절의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근현대 화폐사의 일단을 인과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복 이후는 혼란스러운 정국 하에서도 차츰 화폐제도와 화폐가 정립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다. 굴신제한 제도와 최고발행액 제한 제도를 거쳐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과 맞물려 화폐 발행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의 화폐제도가 자리 잡았다. 또한 화폐와 관련해서는 각각 두 차례의 화폐교환 조치와 통화조치가 있었는데, 화폐교환 조치는 38도선 이북 지역의 통화개혁의 여파와 전란기 적성통화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으며, 통화조치는 전란기 인플레이션의 해결과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광복 이후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객관적인 사료가 존재하기에,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화폐 권종의 변화나 화폐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광복 이후 한국은행의 설립과 맞물려 국가가 통화정책을 경기조절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설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 시기가 가지는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제적인 교류의 증가와 맞물려 국가간 화폐의 교환이 빈번해지면서, 국제적인 맥락에서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어 왔는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 한국 근현대 화폐사의 추이는 고조선과 삼국, 그리고 고려와 조선 왕조를 거치면서 면면하게 펼쳐져 온 우리나라 화폐사의 전개과정이며, 개항과 국교 확대 이후 일본을 비롯한 서구의 이른바 ‘근대’의 침략과 그 식민의 질곡 속에서 굴절되면서도 또한 그 내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 근현대 화폐사의 서술은 그 기점을 비록 개항 이후에 두더라도, 반드시 조선을 비롯한 전통 화폐사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정리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질 때 그 역사적 실체와 진실성을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화폐의 발행과 관리를 책임 맡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우리의 화폐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해 갈 때, 이 같은 역사적 관점의 튼실한 정립과 그에 기초한 서술이 절실함은 더욱 분명하다. 이를 위해 최근 화폐사 연구자가 더욱 희소한 현실에서 이들 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좀 더 쉽고 체계적인 내용을 갖춘 “한국화폐사”를 기술하고 이를 영역(英譯)하여 국제학계나 다른 나라 국책은행에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폐사에 대한 국제적 이해의 제고를 도모하려는 노력도 필수적임을 끝으로 첨언한다.

## Ⅵ. 참고문헌

### 1. 자료(집)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增補文獻備考』

第一銀行, 『韓國貨幣整理報告書』, 1909.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 『朝鮮經濟年譜 昭和16年』, 改造社, 1943.

朝鮮銀行, 『朝鮮銀行統計月報』, 각 연도.

朝鮮銀行, 『諸計算書』, 각 기.

朝鮮銀行, 『統計年報』, 1938.

朝鮮銀行, 『朝鮮經濟年報』, 1948.

朝鮮銀行, 『經濟年鑑』, 1949.

朝鮮總督府, 『大正十四年 朝鮮金融事項參考書』, 1926.

朝鮮總督府, 『昭和十年 朝鮮金融事項參考書』, 1935.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38.

### 2. 연구서

강만길, 『한국 상업의 역사』, 1974.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 상업 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고승제, 『한국금융사연구』, 일조각, 1970.

구용서, 『조선은행40년(上)』, 금융경제사, 198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화폐의 변천-정성채 박사 기증 화폐전-』, 신유,



1993.

국사편찬위원회 편, 『고종시대사』 1~6, 1969.

\_\_\_\_\_ 편,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주』, 두산동아, 2006.

김낙년, 『일제 하 한국경제』, 해남, 2003.

\_\_\_\_\_,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_\_\_\_\_, 『한국의 장기통계 : 국민계정 1910-1945』,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김영자 편, 『100년 전 유럽인이 유럽에 전한 조선왕국 이야기』, 서문당, 1987.

배영목, 『한국금융사 1876-1959』, 개신, 2002.

배영목 외, 『한국의 은행 100년사』, 나남, 2004.

오두환, 『한국근대화폐사』, 한국연구원, 1991.

원유한, 『조선후기 화폐사 연구』, 한국연구원, 1975.

\_\_\_\_\_, 『한국의 전통사회-화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_\_\_\_\_, 『한국화폐사(고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한국은행, 2006.

\_\_\_\_\_, 『조선후기 화폐사』, 혜안, 2008.

유원동,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일지사, 1977.

윤석범 · 홍성찬 · 우대형 · 김동욱, 『한국근대금융사연구』, 세경사, 1996.

이석륜, 『신고 한국화폐금융사연구』, 박영사, 1984.

\_\_\_\_\_, 『우리나라 화폐금융사(1910-1945)』, 박영사, 1990.

\_\_\_\_\_, 『우리나라 화폐금융사 : 1910년 이전』, 박영사, 1994.

이영훈, 『한국경제사』 II, 일조각, 2017.

이정수 · 김희호,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이헌창,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_\_\_\_\_, 『한국경제통사』, 해남, 2014.

최호진, 『한국화폐소사』, 서문당, 1974.

한국은행, 『조사월보』, 각 호.

- \_\_\_\_\_, 『경제통계연보』, 각 호.
- \_\_\_\_\_, 『朝鮮銀行百圓券交換報告書』, 1951.
- \_\_\_\_\_, 『緊急通貨措置綜合報告書』, 1954.
- \_\_\_\_\_, 『韓國銀行五年史』, 1955.
- \_\_\_\_\_, 『역대한국화폐개관』, 1960.
- \_\_\_\_\_, 『緊急通貨措置綜合報告書』, 1962.
- \_\_\_\_\_, 『한국화폐사』, 1966.
- \_\_\_\_\_, 『증보 한국화폐사』, 1969.
- \_\_\_\_\_, 『한국의 화폐』, 1982.
- \_\_\_\_\_, 『한국의 화폐』, 1994.
- \_\_\_\_\_, 『한국의 금융 경제연표 1945~2000』, 2000.
- \_\_\_\_\_, 『우리나라의 화폐』, 2015.
- 한규훈, 『실록 한국은행』, 매일경제신문사, 1986.
- 한백흥, 『舊韓末 民族銀行 生成史 研究』, 시나리오알타, 1996.
- 홍희유, 『조선상업사-고대중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 第一銀行, 『第一銀行史』, 1957.
- 澁容禮治, 『朝鮮銀行二十五年史』, 朝鮮銀行, 1934.
- 日本大藏省, 『明治大正財政史』 13, 1959.
- 日本大藏省, 『明治大正財政史』 16, 1957.
- 日本銀行金融研究所, 『日本貨幣年表』, 1994.
- 日本銀行調査局, 『圖錄日本の貨幣』 8, 東洋經濟新報社, 1975.
- 日本銀行調査局, 『圖錄日本の貨幣』 9, 東洋經濟新報社, 1975.
- 朝鮮銀行史研究會, 『朝鮮銀行史』, 東洋經濟新報社, 1987.
- 朝鮮銀行史編纂委員會, 『朝鮮銀行略史』, 1960.
- 山本進, 『大清帝国内朝鮮經濟 一開発・貨幣・信用』, 九州大学出版会, 2014.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옮김, 『백년전 한국의 모든 것, 한국과 이웃 나라들』, 살림, 1994.

프레드릭 미쉬킨, 이상규, 이명훈, 정지만 옮김,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퍼스트북, 2017.

Daron Acemoglu, David Laibson, John List, “Economics”, Pearson, 2015.

### 3. 연구논문

고동환, 「조선후기~한말 신용거래의 발달-於音과 換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13, 역사문화학회, 2010.

고승제, 「이조말기 화폐위기의 분석」 『서울대논문집』2, 1955.

김낙년, 박기주, 「해방 전후(1936-1956) 서울의 물가와 임금」 『경제사학』 42, 2007.

김대현, 「한국 근대의 금융과 투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김동욱, 「일제 말기 전시통제체제의 화폐경제적 성격」 『연세경제연구』 2-1, 1995.

김재순, 「露日戰爭 직후 일제의 화폐금융정책과 조선상인층의 대응」 『한국사연구』69, 1990.

김재호, 「근대적 금융제도와 중앙은행제도의 연혁 - 19세기 말부터 1960년대까지」, 『지역개발연구』39-1, 2007.

\_\_\_\_\_, 「조선후기 중앙재정과 동전 - 『부역실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44, 2008.

김준보, 「한말 화폐정리와 농업공황의 기구」, 『한국사연구』 13, 1976.

김현숙, 「고문관 러젠드르 (C.W.LeGendre:이선득)의 경제개발안과 화폐개혁안의 성격-부국책(1883년)을 중심으로-」 『경제사학』30, 경제사학회, 2001.

- 김희호·이정수, 「광무연간 일본화폐의 유통 확대와 일본의 금 수탈」, 『역사와 경계』 103, 2017.
- \_\_\_\_\_, 「1865~1910년 국제 금분위제도와 근대조선의 화폐량 추정」 『역사와 경계』108, 2018.
- 김홍수, 「조일수호조규 부속조약의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57, 한일관계사학회, 2017.
- 도면희, 「갑오개혁 이후 화폐제도의 문란과 그 영향 (1894~1905)」 『한국사론』21, 1989.
- \_\_\_\_\_, 「갑오개혁 이후의 근대적 금융기관」, 『국사관논총』 77, 1997,
- 박선희, 「일제의 화폐 정리 후 금융기관의 공간적 분포와 변화」, 『한국도사지리학회지』6-2, 2003.
- 박준채, 「한말 전환국의 사적 고찰」 『經濟史學』4, 1980.
- 방기중, 「17-18세기 전반 금납 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45, 1984.
- \_\_\_\_\_, 「19세기 전반 조세 수탈 구조의 특질과 기반」 『국사관논총』17, 1990.
- 배석만, 「태평양전쟁기 일본 전시금융금고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자금 투융자 구조와 실태」, 『경영사학』63, 2012.
- 배영목, 「일제하 식민지 화폐제도의 형성과 전개」, 『경제사학』11, 1987.
- \_\_\_\_\_, 「통화량과 통화 구성의 장기 추이, 1905-2014」, 『경제사학』61, 2016.
- 양동휴, 「16-19세기 귀금속의 이동과 동아시아 화폐제도의 변화」, 『경제사학』 54, 2013.
- 양정필, 「근현대 개성상인의 경제조직 시론 - 3대 상업제도와 3대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0, 2008.
- 오기수, 「조선시대 조세(租稅)와 세전(稅錢), 세금(稅金) 용어의 역사적 고찰」 『세무학연구』29, 한국세무학회, 2012.
- 오두환, 「당오전연구」 『경제사학』6, 1983.
- \_\_\_\_\_, 「식민지 시대 조선의 경제개발과 금융」, 『연구논문집』10-1 인하

- 대 산업경제연구소, 1996.
- \_\_\_\_\_, 「식민지시대 초기의 조선의 통화와 금융」 『경상논집』 12-2,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1998.
- \_\_\_\_\_, 「일제 하 한국의 화폐제도」, 『성곡논총』 19, 1988.
- 오 성, 「한말~일제시대 開城의 時邊制」 『한국근현대사연구』 21, 2002.
- 원유한, 「당오전고」 『역사학보』 35·36, 1967.
- \_\_\_\_\_, 「18세기에 있어서의 화폐정책」, 『사학연구』 19, 1967.
- \_\_\_\_\_, 「전환국고」, 『역사학보』 37, 1968.
- \_\_\_\_\_, 「잠곡 김육의 화폐경제사상」, 『홍대논총』 11, 1980.
- \_\_\_\_\_, 「반계 유형원의 상업 진흥론」, 『홍대논총』 15, 1989.
- \_\_\_\_\_, 「관료학자 김신국의 화폐경제론」, 『용암 차문섭 교수 화갑 기념 조선시대사 연구』, 신서원, 1989.
- \_\_\_\_\_, 「구당 유길준의 화폐사상」 『尹炳奭教授華甲紀念韓國近代史論叢』, 지식산업사, 1990.
- \_\_\_\_\_, 「海錦 吳達運의 화폐경제론 : 실학자의 화폐경제론과 비교 고찰」, 『동국사학』 31, 1997.
- \_\_\_\_\_, 「17世紀 高級官僚 許積의 貨幣經濟論」, 『동국사학』 32, 1998.
- \_\_\_\_\_, 「조선시대 화폐사 시기 구분론」 『역사와실학』 32, 역사실학회, 2007.
- 원재린, 「18·19세기 북학론의 전개와 정부의 상공업 정책」, 『세도정권기 조선사회와 대전회통』, 해안, 2007.
- 유자후, 「조선어음고」 『朝光』 4월호, 1940.
- 이영훈·박이택, 「18세기 조선왕조의 경제체제」, 『근대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2007.
- 이재운, 「18세기 화폐경제의 발전과 전황」, 『학림』 18, 1997.
- 이해경, 「조선후기 조세금납화와 화폐유통에 관한 연구-전세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소논문집』 22, 1992.
- 이헌창, 「1678 ~ 1865년간 화폐과 화폐가치의 추이」, 『경제사학』 27,

1999.

- 임성수, 『朝鮮後期 戶曹의 財政運營 研究 : 加入 · 鑄錢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전상인, 「해방공간의 사회사」, 『해방전후사의 재인식』Ⅱ, 책세상, 2006.
- 전성호, 「개성 시변제도 연구 - 개성상인 회계장부 신용 거래 분석(1887~1900)」 『大東文化研究』 75, 2011.
- \_\_\_\_\_, 「조선후기 換·於音 거래 분석(1887-1900) : 박영진가 회계장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8, 2011.
- 정병욱, 「한말 · 일제초기 은행설립론과 국가 · 상인」, 『한국사학보』 17, 2004.
- 정성일, 「상평통보를 소지한 조선의 표류민과 대마도(1693-1862)」 『역사와 경계』101, 2016.
- 정안기, 「1940년대 전시금융금고의 조선 진출과 금융통제권」, 『경제사학』 55, 2013.
- \_\_\_\_\_, 「1940년대 전시금융금고의 식민지 군수금융 - 식민지 조선에서의 융자 활동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70, 2016.
- 조명근, 「1920-1930년대 조선은행의 금융활동에 대한 조선 내 여론 동향」, 『대동문화연구』75, 2011.
- \_\_\_\_\_, 「1941년 조선은행권 발행 제도 개정 연구 - 최고 발행 한도액 산정과 납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사총』83, 2014.
- \_\_\_\_\_, 「조선은행권 발행 제도에 있어서 보증준비의 함의 - 국책과 영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61, 2013.
- 조영준, 「19世紀 王室財政의 運營實態와 變化樣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설립 초기 전환국의 운영 실태, 1883-1892」 『정신문화연구』 37-1, 2014.
- 최원철, 「일본 통치 시대의 조선식산은행과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 관한 연구」, 『일본근대학연구』30, 2010.

함경우, 『1894년 甲午農民運動 發生의 經濟的 背景』, 연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5.

허동현, 「어윤중, 수문록·재정견문」 『한국사 시민강좌』42, 2008.

홍준화, 「雲南·大韓신디케이트차관과 열강의 개입(1901~1902)」 『한국사학  
보』28, 고려사학회. 2007.

姜德相, 「李氏朝鮮開港直後におけ朝日貿易の展開」 『歴史學研究』265, 1962.

村上勝彦, 「第一銀行朝鮮支店と植民地金融」 『土地制度史學』61, 1973.

#### 4. 용역과제 보고서

박평식, 『한국화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고조선·삼국 ~ 조선후기』, 한  
국은행, 2018.